

---

# **2017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**

---

**2017. 1.**



**행정자치부**

### **적용범위**

- 본 시행지침은 2017년 「마을기업 육성사업」 업무에 관하여 적용
-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사업 취지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정함



I.	사업개요	1
II.	운영체계 및 기관별 역할	8
III.	사업추진절차	10
IV.	세부 운영방안	11
1.	마을기업 지원기관 선정	11
2.	마을기업 교육	13
3.	마을기업 신청	15
4.	심사 및 지정	16
5.	약정 체결 및 변경, 해지	20
6.	사업비 지원, 집행 및 정산	22
7.	자립 지원	28
8.	지도·점검 및 관리	28
9.	사업비 집행 실적 평가	31
10.	마을기업의 지정취소	31
V.	마을기업의 발굴 및 육성	33
1.	신유형 마을기업	33
2.	예비 마을기업	34
3.	유통형 마을기업	35
VI.	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실적 평가	38
VII.	사업비 회계처리 기준	39
	붙임 관련서식	60

## 1 개념 정의

### □ 마을기업

-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,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·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
  - (지역자원) 지역에 존재하는 유·무형의 자연적·문화적·역사적 자산
  - (지역문제) 전체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
  - (지역공동체 이익) 마을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얻게 되는 편익의 총합
  - (마을) 지리적으로 타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 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
- 사업비 지원 종료 후 자생력을 갖고 성장해나가는 마을기업을 ‘자립형 마을기업’이라 함
- 지역성, 공공성 등 마을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, 마을기업으로 발전가능성이 있어 광역자치단체의 장에 의해 지정된 기업을 ‘예비 마을기업’이라 함

### □ 마을기업 지원기관

- 마을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총괄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가 공모를 통해 선정한 기관

## 2 마을기업 요건

### □ 기업성

- 마을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함
  - 단순히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사회단체나 조직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
- 마을기업의 사업은 시장경쟁력이 있어야 함
  - 장기적으로 주수입이 사업에서 나와야 하며 순수 민간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한 사업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
- 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해야 함
  - 마을기업은 순이익의 10% 이상을 사업 추진에 대한 손실금 충당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고(단, 보조금을 지원 받은 해에는 30% 이상을 적립함), 순이익의 50% 이상을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적립해야 함
- 기업으로서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, 상법에 따른 회사,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, 농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
  -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·군·구에서 시·도로 추천 불가

### □ 공동체성

- 마을기업은 출자자 개인의 이익과 함께 마을기업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함
-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(법인)에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하여야 함
- 마을기업의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함
  - 마을규모, 지역범위,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출자자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함
    - \* 10인 이상이 출자할 것을 권장함

- 마을기업의 회원 외에도 구매자, 소비자, 고용자 등 다양한 지역 주민 및 지역 내 이해당자사의 의견을 중요하게 반영해야하며, 지역순환경에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함

## □ 공공성

- 마을기업은 마을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함
-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% 이하여야 하며, 특정 1인과 그 특수 관계인\*의 지분의 합이 50% 이하여야 함
  - \* ①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②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%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%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
-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  - 법인의 한 사업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
- 마을기업은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공헌활동(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)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
-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해서는 안 됨
-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고 일자리 및 소득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함

## □ 지역성

- 마을기업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·운영 되어야 함
- 마을기업은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해야 함
  - 지역 간 유동이 쉬운 자원은 마을기업 사업으로 부적합

-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
  - 마을기업 사업비의 일정부분\*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하여야 함
    - \* 보조금의 20%이상 자부담 하여야 함 (우수마을기업 선정시 자부담 제외)
  - 마을기업 출자자(회원)의 70% 이상, 고용인력의 70% 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함,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

❖ 지역의 범위 (거주지 또는 직장주소 기준)

- 농촌지역은 ‘읍·면’을 기본으로 함
- 도시지역은 ‘구(자치·행정구)’를 기본으로 함
- ‘구’가 없는 시(도농복합시, 행정시 등)는 ‘동’ 지역간 연계 가능

\* 다만, 사업성격·주민생활권 등의 사유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범위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시·도에서 인정하는 경우 예외 인정

\* 지역주민 비율(70%) 산정방법 : 6인 출자시 지역주민 5인 이상(4.2명→5명), 8인 출자시 지역주민 6인 이상(5.6명→6명)

## □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

-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미흡하여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
-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
-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\*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
  - \* 토지 용도변경, 영업허가 등 관련법령상 사업이 불가한 경우 등
-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
-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
-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

-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(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)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
  - ※ 지방자치단체는 별도의 모사업 유무에 대해 반드시 확인할 것
- 타 기관·타 사업과 관련한 민간 자격 부여 및 자격증 발급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단체
-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

## □ 중복지원 제한

- 마을기업 육성 사업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정보화 마을(행자부), 사회적기업(고용부), 농촌공동체회사(농림부)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함
- 지자체는 마을기업 추천 시 기준 지원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함
- 마을기업의 정체성, 자립성 강화 등을 위해 보조금 지원 종료후(1차년 또는 1·2차년 최종지원 종료) 2년 경과시 타부처 정부지원 보조사업 등으로 지원신청 가능
  - ※ 지자체에서는 마을기업 설립전 교육 신청자 공모 및 사업신청 공모 시 공고 내용에 동 사항을 반영, '16년 이전에 지정된 마을기업도 포함됨

### 3 지원내용

#### □ 사업비 지원

##### ○ 마을기업 사업비는 유형별 차등 지원

- (지급금액) 1차년 : 5천만원 / 2차년 : 3천만원 / 예비마을기업 : 1천만원
  - ※ 유통형 마을기업, 신유형 마을기업 등 행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,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
- (지급방식) 지방자치단체 설정에 따라 일괄 또는 분할 지급
- (사업기간) 사업개시일(약정체결한 날) 부터 해당 회계연도 내
  - ※ 4분기 사업선정 등 집행이 어려운 경우 행자부 협의를 거쳐 이월 가능
- (자부담) 마을기업, 보조금의 20%이상 공동출자
  - \* 자부담 기준은 예비마을기업 포함, 우수마을기업 선정시 제외
  - ❖ 총사업비 : 보조금 + 자부담
  - ❖ 보조금 : 마을기업 지원을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
  - ❖ 자부담 : 법인 설립 등 마을기업 회원들이 출자한 금액의 합
    - 예) 보조금이 5,000만원인 경우, 자부담액은 1,000만 원 이상 (이 경우 총사업비 6,000만원)
    - 보조금이 3,000만원인 경우, 자부담액은 600만 원 이상 (이 경우 총사업비 3,600만원)

##### ○ 2차년도 지원은 1차년도 성과 및 2차년도 사업계획 등 해당 마을

기업의 지속적인 수익 및 일자리창출 가능성, 지역 사회공헌활동 내용 등 마을기업으로서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지원

- 1차년도 약정체결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마을기업에 한해서 신청 가능
  - ※ 2017년 2차년도 지원 신청하는 마을기업은 약정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면 가능
- 2차년도 지원심사에서 탈락한 마을기업의 경우, 심사시 지적내용에 대한 보완 후 다음해 재신청 가능

##### ○ 우수 마을기업, 스타 마을기업 등 행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사업비 지원 가능

## □ 자립 지원

- (교육) 마을기업 회원 및 근로자, 마을기업 설립희망자, 기타 마을기업에 관심 있는 자에 대한 교육 실시
- (경영컨설팅) 마을기업 경영상황을 파악하여 일상적 경영자문서비스 제공
- (박람회개최) 연 1회 이상 전국단위 마을기업 박람회 참여 지원
- (판로지원) 백화점, 지역 유통점, 온라인 판매처, 유통형 마을기업 등과 연계하여 판로 개척·확대
- (멘토링) 우수기업과 신규기업을 멘토-멘티로 연결하여 경영노하우 전수
- (마케팅) 스타마을기업 육성, 브랜딩, 홍보활동 지원

## II

# 운영체계 및 기관별 역할



## □ 행정자치부

- 기본계획 및 지침 수립 등 제도적 기반 마련
-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교부 등 제도운영 관련 행정적·재정적 지원
- 시·도에서 지정 심사한 기업을 대상으로 마을기업 최종심사  
※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요건 충족여부 등 최종 심사(문제사업 등에 한하여 현지실사)
- 업무담당 공무원, 마을기업 대표 및 지원기관 종사자 대상 전문교육과정 운영
- 지방자치단체의 마을기업 육성사업 수행 현황 점검 및 성과 평가
- 우수마을기업 선정 및 우수사례 발굴·전파
- 신유형 마을기업 발굴, 스타마을기업 육성

## □ 광역자치단체

- 시·도단위 사업계획 수립 및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전반적 관리·감독
- 마을기업 공모, 시·군·구에서 추천된 법인을 대상으로 심사 후 행정자치부 추천
-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·군·구 지원 예산 및 대상 법인(단체) 수 결정
- 지원기관 공모, 심사 및 계약체결, 지원기관 활동사항 모니터링 및 행정자치부 제출
- 신유형 마을기업 발굴 및 추천
- 기초자치단체의 마을기업 사업 추진실적 분석 및 행정자치부 제출

## □ 기초자치단체

- 신유형 마을기업 발굴
- 마을기업 신청 법인 대상 적격 검토, 시·도에 추천
- 지정된 법인과 마을기업 지원 약정 체결
- 마을기업에 대한 사업비 지급 및 관리, 부정수급 등 감독
- 사업추진 관리카드 작성 및 현장점검
- 마을기업 사업 추진실적 분석 및 시·도 제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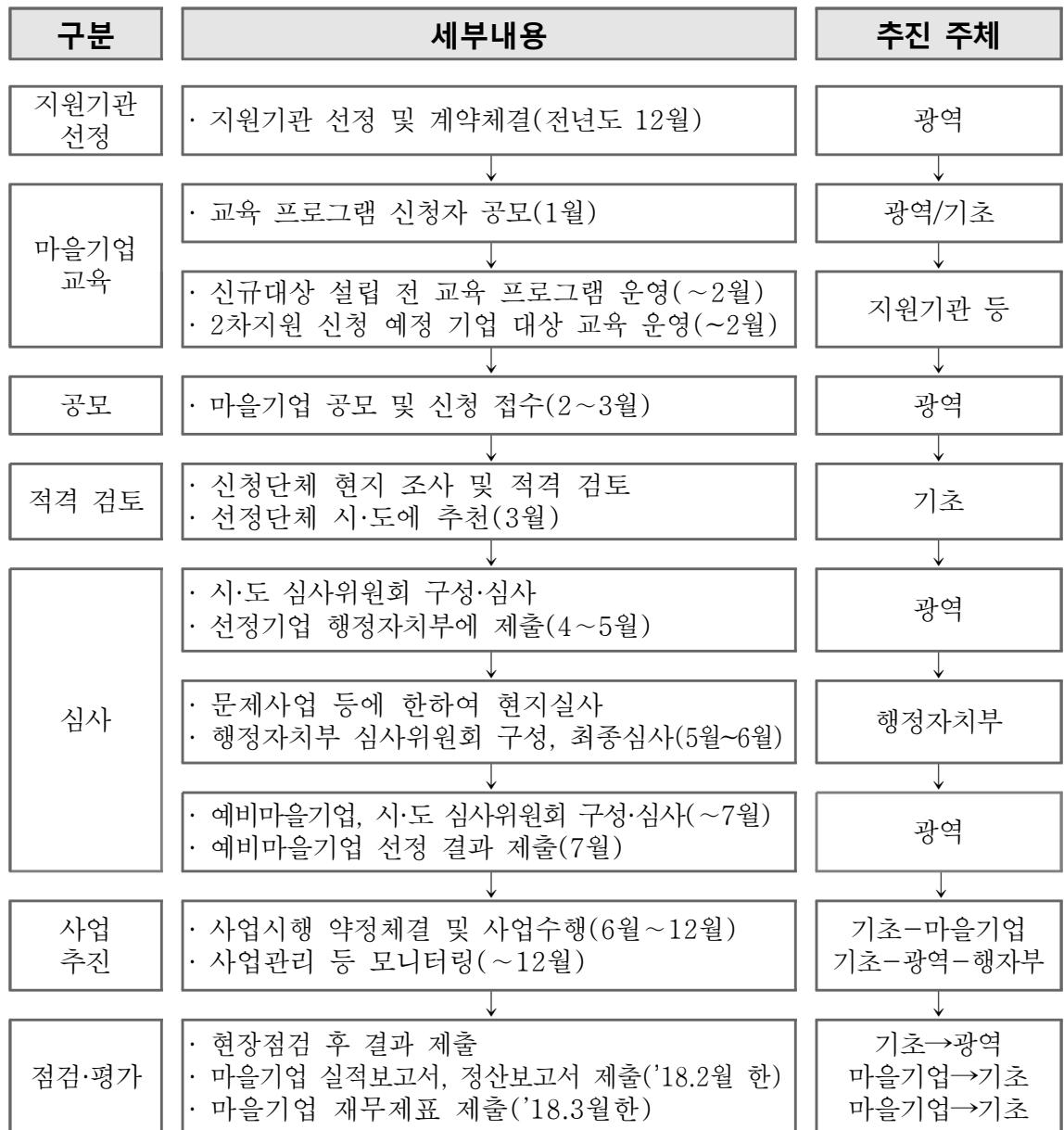
## □ 마을기업 지원기관

- 마을기업 교육 기획 및 운영
- 신유형 마을기업 발굴
- 마을기업 지정 및 심사 지원
- 상시 경영컨설팅 및 현장지원
- 마을기업 지원 계획 및 실적 광역자치단체에 제출
- 마을기업 교육 계획 광역자치단체에 제출
- 마을기업 판로지원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
- 기타 필요한 업무

❖ 지방자치단체 및 지원기관 등은 마을기업 관련 서류에 대하여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에 주의할 것

### III

## 사업추진절차



- ※ 마을기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17년 5월말까지 시·도 추천 완료
- ※ 마을기업의 2차지원 심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적보고서, 정산보고서 등의 제출을 2017년 3월말까지 완료할 것
- ※ 2018년 3월말까지 모든 마을기업은 재무제표를 제출할 것

## 1 마을기업 지원기관 선정

지원기관 공고(지자체) → 우선협상대상자 선정(선정위원회)  
→ 위탁비용 결정(지자체) → 계약체결(지자체-지원기관)  
→ 지원업무 수행(지원기관) → 수행실적 평가(행정자치부)

### □ 지원기관 공고 · 선정

- 광역자치단체가 마을기업 지원기관을 공고·선정
-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
  - ※ 선정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의 마을기업 관련 국·과장, 행자부 추천자, 민간 전문가 등 7인 이상의 민관위원으로 구성
- 필요한 경우, 복수의 기관을 컨소시엄 형태로 선정
- 지역 대학의 산학협력단이나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 단체, 법인, 연구원 등도 지원기관으로 참여 가능
- 마을기업관계자(협회, 연합회, 협의회, 마을기업 대표 등 마을기업인이 참여하여 만든 법인·단체)는 지원기관이 될 수 없음
- 응찰기관의 역량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근 광역자치 단체의 지원기관을 활용 가능

## □ 위탁계약 체결

- (계약체결)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지원기관과 계약 체결
  - 지방자치단체별 마을기업 컨설팅 및 설립지원 배정 예산액의 범위에서 계약대상자에 대한 위탁계약 금액 확정  
※ 지역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구 수, 경제활동 인구, 마을기업 수, 활성화 기반 현황 등 지원기관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위탁금액 확정
  - 확정된 위탁계약 금액에 따라 광역자치단체-지원기관 간 계약 체결
- (계약비용) 지방자치단체의 마을기업 운영비 등을 활용하여 집행
  - 필요한 경우 지원기관으로 선정된 민간기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산하기관의 공간을 제공 가능
  - 선금 이외에도 기성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 가능

## □ 지원기관 명칭 사용

- 지원기관은 “OO시(도) 마을기업 지원기관” 명칭을 사용
- 마을기업과 관련된 업무 활동 범위 내에서는 반드시 지원기관 명칭 사용

## □ 지원기관 운영 및 관리

- 지원기관은 광역지자체에 마을기업 지원실적 제출
- 지원기관은 마을기업 교육 등 사업계획을 광역자치단체에 제출  
※ 교육 대상, 시간 및 장소, 강의 주요 내용, 강사 프로필 등 구체적 계획 포함
- 지원기관은 행정자치부의 지정 심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함

## 2 마을기업 교육

### □ 개요

- (목적) 마을기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 보다 충실한 마을기업 설립 및 마을기업의 발전 도모
- (대상) 마을기업 회원 및 근로자, 설립 희망자, 담당공무원 등
- (교육과정) 입문, 기본, 심화, 전문 교육 등
- (교육운영) 해당 시도 마을기업 지원기관
- (이수확인) 교육을 운영한 마을기업 지원기관이 확인

### □ 교육과정별 특징

- 설립 전 교육은 입문, 기본, 심화 과정으로 구성하며 지침에 따라 교육 시간, 이수효력기간,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
  - 입문, 기본, 심화 과정은 지침에 따라 필수 및 선택 내용으로 구성할 것을 권장하며, 필요한 경우 선택 내용을 추가할 수 있음

#### <교육 구성 및 권장 내용>

구분		필수	선택
입문	(4시간, 무료) 이수효력: 2년	공동체 지원 정책의 이해 (※마을기업 지침 주요내용) 지역공헌 등 마을기업의 윤리	해당 지자체의 마을기업 지원 내용 마을기업 설립 사례
기본	(10시간, 유료) 이수효력: 2년	마을공동체 이해 마을자원조사 마을문제해결 지속가능한 마을기업	마을기업우수사례(견학) 공동체 운영 및 관리
심화	(10시간, 유료) 이수효력: 2년	마을기업 사업계획 수립(마을기업 관련 서류 작성요령) 재무기초 마케팅 전략	기업윤리 인사 및 노무 관리 상품 허가 및 등록, 개발(저작권, 특허 등)

\* 교육비는 지역 여건 및 실정에 따라 조정 가능, 입문과정은 단순 설명회와 구분, '16년 입문교육 이수효력(2년) 인정 가능

- 도서 산간지역 등 특별 지역에서는 입문, 기본, 심화(설립전 교육) 과정 및 지역 특화 과정을 별도로 기초지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음
  - 이 경우에도 설립전 교육 과정으로 운영은 반드시 해당 시도 마을 기업 지원기관에 위탁하여야 함
- 전문과정 교육비용 등 자율적 운영
  - 2차 지원 및 우수마을기업 희망자 대상 교육은 제도(마을기업 육성 사업, 보조금의 관리 등) 및 환경(시장, 지역 등)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함

#### <전문 교육 특징>

구분		대상	내용
전문	4시간 (비용:자율)	2차 지원 신청 희망자 우수마을기업 신청 희망자 마을기업 업무 담당 공무원	홍보, 마케팅, 브랜드 관리, 서비스 등 기업 전문성 강화 교육 상품 및 서비스 기획·개발, 특히 신청, 저작권 관리 등 기업 질적관리 기타 마을기업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교육

- 최신 마을기업 우수사례, 해외 우수사례 등을 지속 공유할 것
- 기초지자체 담당자 등 공무원도 필요한 교육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것

#### □ 교육 이수와 각종 신청 자격

- 교육의 이수효력은 교육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발생하고, 마을기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교육 이수 여부를 판단함
- 신규 마을기업은 5인\* 이상 회원이 설립전 교육(24시간)을 이수하여야 함
- 2차년도 지원 신청하는 마을기업은 5인\* 이상 회원이 4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신청년도에 새로이 이수하여야 함
- 우수마을기업 신청을 위해서는 3인\* 이상 회원이 마을기업 지원기관에서 제공하는 4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신청년도에 새로이 이수하여 함
  - ※ 기존 교육의 이수여부와 관계없이 우수마을기업 신청시 교육 이수 필요
- \* 법인대표, 사무운영 및 관리 이사는 필수인원으로 참여하여야 함

### 3 마을기업 신청

#### □ 마을기업 공모

- 마을기업에 대한 공모는 광역자치단체에서 함

#### □ 마을기업의 신청

-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신청하며,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마을기업이 제출 서류를 통해 증명해야 함

- 신청시 제출 서류

- ①사업신청서(서식1), ②사업계획서(서식2), ③마을기업 회원 명단(서식3),  
- ④법인등기부등본, ⑤정관, ⑥주주 및 조합원 명부, ⑦법인 명의의 통장
  - \* 통장은 자부담 예정 금액을 입금한 후 해당내역을 정리하여 제출
- 2차지원 신청의 경우, ⑧실적보고서(서식4), ⑨정산보고서(서식5),  
⑩재무제표 추가 제출
-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, 인허가 증명서 사본, 사업장 등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(계약기간 명시) 사본, 사업 준비사항을 증명 할 수 있는 인증서 등

❖ 자부담 예정금액은 법인 기금으로 활용 가능, 자부담을 법인 기금에서 일괄 출자시 법인 정관에 정한 의사결정 방법에 따르되, 출자금 명부 등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

## 4 심사 및 지정

### □ 기초자치단체 적격 검토 등

- 신청한 마을기업이 필수 선정 요건을 갖추었는지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중심으로 한 적격 검토를 원칙으로 함
- 필요시 심사위원회를 구성·운영 가능하며, 적격 검토를 통과하지 못한 마을기업은 탈락이므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

#### 적격 검토 절차

- 사업신청을 받은 시·군·구에서는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현지조사표 작성
- 현지조사 결과 및 제출 서류에 근거하여 현지조사표, 적격 검토 확인서, 마을기업 제출서류를 갖추어 기초자치단체장 명의로 시·도에 추천

#### 심사 방법

- 심사위원회는 시·군·구 공무원, 민간전문가, 지원기관 종사자 등 5인 이상 민관위원으로 구성(이를 ‘시·군·구 심의위원회’라 칭함)
  - 위원장은 시·군·구 국장급 공무원으로 정함
    - \* 국장급이 없는 경우는 부단체장
  - 마을기업의 자립가능성을 심사할 수 있는 지역 전문경영인 포함
  - 민간 위원 비율 50% 이상 참여,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
    - \* 심사의 객관성을 위해 위원이나 위원장이 신청기관의 대표 또는 구성원으로 참여한 경우, 친족관계 등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심사에서 배제

- 서면심사위원회가 개최되는 경우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별로 마을 기업 심사표를 작성
  - 현지조사표, 적격 검토 확인서, 마을기업 제출서류를 토대로 심사표를 작성하고 심사결과를 합산하여 결정
-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·군·구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

## □ 광역자치단체 심사

- 광역자치단체장은 현지실사 및 심사위원회를 통해 마을기업의 공동체성, 공공성, 지역성, 사업성 등을 판단하여 선정한 마을기업을 행정자치부에 추천\*하여야 함
  - \* 추천시 광역자치단체 현지조사 및 심사 결과서 등 첨부

### 심사위원회

- 시·도 공무원, 민간전문가, 행정자치부 추천위원(2인\*) 등 7인 이상의 민관 위원으로 구성 \* 분야별 전문가, 타지원기관
  - 위원장은 시·도 국장급 공무원으로 정함
  - 위원 구성시 지역전문가, 회계, 마케팅, 제도, 전문경영인 등 포함
  - 민간 위원 비율 50% 이상 참여, 위원회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
    - \* 심사의 객관성을 위해 위원이나 위원장이 신청기관의 대표 또는 구성원으로 참여한 경우, 친족관계에 있는 등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심사에서 배제
- 심사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함

### 심사 절차 및 방법

- 현지조사표, 마을기업 제출 서류를 토대로 마을기업 사업의 적절성 및 우수성을 심사
  - 심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신청단체의 브리핑을 받은 후 심사

- 심사위원회에서 신유형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고, '16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신유형 마을기업이 2차년도 사업으로 신청시 선정기준은 2차년도 지원 심사기준에 따름
- 탈락한 마을기업은 탈락 사유를 명시하여 시·군·구에 통보

## □ 행정자치부 심사 및 지정

- 시·도에서 선정한 마을기업과 법인에 대하여 시도 심사결과를 토대로 선정 요건 충족여부 등 심사 후 최종 선정(현지실사 생략) \*문제·특이사업에 한하여 현지실사
  - 민관심사위원회로 구성된 중앙심사위원회 개최, 1차 및 2차지원 여부 최종 결정
- 기초지자체와 약정 체결 이후 해당 마을기업에 대해 행정자치부장관 명의의 지정서 교부

## □ 심사기준

### 신규지정

평가항목		배점	평가지표
공동체성	20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참여자간 충분한 공감대 형성 및 자발적 참여 정도</li> <li>■ 지역여건 및 사업내용에 비추어 공동체 구성의 적절성</li> <li>■ 출자자수(10인 이상 권장) 등</li> </ul>
공공성 및 지역성	20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출자비율, 지역주민 비율 등</li> <li>■ 활용하는 지역자원의 공공성 및 제품 및 서비스의 공공성</li> <li>■ 지역문제 해결에의 기여 정도, 사업계획과 지역 상황의 조화</li> <li>■ 지역에의 공헌 정도</li> </ul>
기 업 성	상품의 시장성	1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상품 및 서비스의 적절성과 우수성, 시장경쟁력 등</li> </ul>
	실현가능성	1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, 필요 기술 및 자원 보유 여부 등</li> </ul>
	지속가능성	1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시장성, 공동체성, 사업아이템의 특성 등의 종합적 판단을 통해 정부 보조금 지원중단 이후에도 독자적으로 사업 유지가 가능한지 판단</li> </ul>

평가항목	배점	평가지표
판매가능성	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판매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적 준비 정도</li> <li>■ 마케팅 전략의 실현가능성</li> </ul>
차별성	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다른 기업과의 차별성, 제품 및 서비스의 독과점성 등</li> </ul>
안정적인 일자리 창출	2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지역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목표 및 달성가능성</li> </ul>
가점부여분야	3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</li> <li>■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</li> <li>■ 산유형 마을기업(새로운 지역자원 발굴 공공서비스 창출 등)으로 신청한 경우</li> <li>■ 여성가장(주민등록상 세대주)이 마을기업 대표 또는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</li> <li>■ 예비마을기업으로서 모범적으로 운영한 경우</li> <li>■ 빙집, 폐교 등 활용방안을 포함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</li> </ul> <p>*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1가지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  *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</p>
총 계	100	

## 2차년도 지원

평가항목	배점	평가지표
공동체성	2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지난 사업 운영 과정에서 공동체 활동 적절성</li> <li>■ 지역내 공동체 강화 노력 정도</li> <li>■ 출자자 수 및 출자액의 증가 정도</li> </ul>
공공성 및 지역성	2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공공성 있는 지역자원 발굴 등 공공성을 위해 노력한 정도</li> <li>■ 지역문제 해결에의 기여 정도, 사업계획과 지역 상황의 조화</li> <li>■ 지역에의 공헌 정도(1차년도 공헌계획 이행 정도)</li> <li>■ 이익의 적립·재투자 정도</li> </ul>
기 업 성	2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계획 대비 성과 달성 정도, 계획 이행의 충실성</li> <li>■ 보조금 활용 사업의 연속성</li> <li>■ 매출 및 이익 수준</li> </ul>
지속가능성	2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사업의 발전가능성</li> <li>■ 향후 계획의 충실성 등 종합적인 지속가능성</li> </ul>
안정적인 일자리 창출	2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지역일자리 창출 성과</li> <li>■ 일자리 추가 창출 가능성</li> </ul>
총 계	100	

## 5 약정 체결 및 변경, 해지

### □ 약정 체결

- 기초자치단체장은 행정자치부의 마을기업 지정 후 「마을기업 지원 약정」 체결(서식8)
- 약정은 마을기업 지정 결정 후 2개월 이내 체결, 해당 기한 내에 체결하지 못하면 마을기업 지정 결정 취소
- 자립형 마을기업의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초자치단체장과 「마을기업 운영 약정」 등을 체결할 수 있음

### □ 약정내용의 변경

- 마을기업은 사업내용 및 사업예산 등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마을기업 계획변경 신청서(서식7)와 변경된 마을기업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함
  - 기초자치단체장은 변경 내용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이를 승인 할 수 있으며, 기존의 사업내용과 현저히 다를 경우\*나 법인 형태 등 변경 시\*\*에는 시·군·구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야 함

\* 자부담액, 사업종목 등 지정여부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는 사항의 변경

\*\* 변경 전·후 법인의 구성원 및 사업내용이 동일한 단순 명칭 변경시 시군구 심의 위원회 승인, 다만 법인 합병시에는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

  - 마을기업 계획변경의 승인에 대해 마을기업이 통보받은 날 약정이 변경된 것으로 봄
- 마을기업이 사업장을 옮기는 경우 반드시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사업장이 관할을 벗어날 경우 이전한 관할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과 약정을 다시 체결하여야 함

- 기초자치단체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동체성과 사업 내용에 변경이 미미한 경우에만 이전을 허가해야 하며, 그렇지 않을 경우 약정을 해지할 수 있음

## □ **약정해지**

- 기초자치단체장은 다음의 경우 마을기업과 약정을 해지하여야 함
  - (포기 및 폐업) 마을기업이 스스로 사업을 중도 포기 한 경우
  - (규정위반) 약정, 관련 법률, 지침 등을 위반한 경우
  - (사업불능) 천재지변, 인허가 취소로 인한 마을기업의 사업 수행 능력 상실, 1년 이상의 휴업 등 행정자치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해 사업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 되는 경우
  - (귀책사유) 기타 마을기업의 고의·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마을기업의 공동체성, 공공성, 사업성 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
- 기초자치단체장은 약정해지 결정을 마을기업에 통지하여야 하며, 그 통지의 도달로 약정의 효력이 종료됨
  -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시·군·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거나 2인 이상의 외부전문가의 소견을 첨부하여 약정해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
- 약정해지는 마을기업 지정취소 사유이므로, 약정해지 이후 지정취소 절차(32쪽)에 따라야 함

## **6 | 사업비 지원, 집행 및 정산**

### **□ 보조금 지원 내용 및 요건**

- (지원금액) 마을기업이 제출한 사업별 예산계획에 따른 신청금액의 타당성을 엄격히 심사한 후 신규지정 시에서는 5,000만원, 2차년도 지원 시에서는 3,000만원, 예비마을기업 지원시 1,000만원\* 한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
  - \* '17년 예비마을기업 선정시 기 추진중인 지자체는 별도로 추진 가능
  - ※ 심사 결과에 따라 당해 마을기업의 계획과 달리 지원금액 조정 가능
- (지급방식) 사업내용 등에 따라 일괄 또는 분할 지급
- (제한요건) 인건비는 수익사업 관련 고용 직원에 대해 총사업비의 20% 이내로 지급 가능하며, 마을기업 대표 및 임원 등(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)에 대해서는 지급 불가
  - ‘기타 운영비’의 총액은 300만원 이하에서 사업비(보조금+자부담) 대비 인정 한도액 범위(52쪽 참조)에 따라 예산편성·집행하여야 하며, 사업기간 중 월별로 균등하게 배분하여 사용해야 함

### **□ 사업비 집행 기준**

- 보조금통장, 자부담통장, 수익금통장 3개의 통장으로 나누어 별도 관리
  - 통장은 반드시 법인명의로 개설, 각각의 통장별로 독립된 장부 관리
  -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관리
- 사업계획에서 정한 비목별로 집행, 다른 용도로 사용금지
- 국고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및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지출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

-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현금으로 사용한 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 처리 금지
  - 계좌이체의 경우 인터넷뱅킹 또는 창구송금을 원칙으로 하며, 송금인·수령인 란의 적요 변경을 금지함
  -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는 해당금액을 환수
- 통장, 회계장부, 증빙자료 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
- 사업비 지출 시,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
- 건당 50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품의 시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2개 업체 이상에 징구하여 금액을 비교하여야 함
  - 조달청, 한국물가협회 등 물가정보 안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함
- 사업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인출 금지

## □ 사업비 정산 및 검토 · 확인

- 기초자치단체장은 사업단체로 하여금 사업종료(매년 12월 말) 후 다음연도 1월 말까지 최종 실적 보고서, 정산 보고서 및 실적 증빙 자료를 제출받아 점검하여야 함(서식 4, 5)
- 점검 내용에 따라 보조금 정산 검사서를 작성하여야 함(서식13)
- 기초자치단체장이 제출된 서류의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보조금액을 확정·통지하여야 사업이 완료됨
- 마을기업의 사회적 역할 강화와 사업 투명성 확대를 위해 모든 마을 기업은 매년 3월말까지 이전년도의 재무제표를 해당 시·군·구에 제출 해야 함

## □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

- 다음과 같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
  - 법령,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(지방자치단체장)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
  - 보조사업 목적 또는 교부결정 내용과 다른 용도로 집행한 경우
  -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
  - 집행증빙서류(세금계산서 등)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
  -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도, 점검, 검사에 대한 거부 또는 허위 보고서 제출 등을 한 경우
- 지방자치단체장은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함
- 지방자치단체장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기업에 대하여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음
  - 보조금 환수 조치
  -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, 제41조, 제42조에 의한 벌칙규정 적용
  - 약정해지 및 지정취소, 마을기업 신청 원천 배제
  - 다른 지방자치단체, 지원기관 등 관련 유관기관에 부정수급 사실 통보 및 유사사업 참여금지 조치
- 마을기업의 집행내용에 부적절한 변경이 있었을 경우, 해당금액 또는 그 비율만큼의 보조금을 환수 조치하여야 함
  - 정산시의 자부담이 보조금결정시의 자부담보다 감소한 경우, 그 감소분 만큼 보조금에서 환수

-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현저히 그리고 고의·과실에 의해 감소하였을 경우 그 감소율만큼 보조금에서 환수
- ※ 실행계획 수립 시 정확한 미래예측에 의한 예산집행계획을 수립(예산편성) 하여야 하며, 제출한 자부담 집행계획도 정부와의 약속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집행

## □ 사업비 지원에 따른 마을기업의 의무

### 사업비 지원을 위한 서류 제출

- (제출서류) ① 마을기업 지원사업비 지급 신청서, ② 마을기업 지원 약정서, ③ (최종)마을기업 사업 계획서, ④ 법인 명의의 통장(보조금, 자부담(출자금), 수익금) 사본 각1부씩 총 3부,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, ⑥ 이행보증보험 증권\* 사본, ⑦ 한국마을기업협회 가입확인증 사본

\* 이행보증보험료, 마을기업협회 가입회비는 마을기업의 자체 부담으로 함  
(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로 집행 불가)

#### \* 이행보증보험 가입

- ▶ (목적)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적정한 이행 담보와 국가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함
- ▶ (보험계약자) 지원받는 마을기업
  - \* 개인이 아닌 법인명의로 발급, 비법인 단체의 경우 법인 성립 이후 보증증권 발급 (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)
- ▶ (피보험자) 시·군·구
- ▶ (보험가입금액) 마을기업 지원사업비
- ▶ (보험기간) 2017년 계약일 ~ 사업종료일(+60일)
- ▶ (보증내용) 마을기업 육성사업 정부보조금 지급보증

## 사업비 정산 서류 제출

-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, 다음연도 1월 말까지 실적증빙을 위한 필요 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함
  - 제출자료는 대표자가 확인 후 직인 및 실인 날인하여야 함
  - 실적보고서 상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성과는 재정투자효과를 사업 진행 또는 완료에 따라 사업시행 전·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비교·작성

## ○ 제출서류

- ① 마을기업 실적보고서
  - ※ 기타 증빙자료 포함 : 관련 사진, 각종 홍보물 견본, 언론 보도자료 등
- ② 마을기업 정산보고서(지출일자별 집행내역 등)
  - ※ 비목별로 집행내역을 합산하여 정리·제출 불가
- ③ 보조금, 자부담, 수익금통장 거래내역 사본 각 1부(인터넷 조회 출력물은 원본만 인정)
  - ※ 사업 최종 종료일 이후 통장정리
- ④ 각종 증빙서류(지출품의서, 지출결의서, 견적서, 사업자등록증, 기타 증빙 영수증 등)
  - ※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반드시 포함
  - ※ 보조금 집행내역 영수증은 사본에 대표자의 「원본대조필」 날인을 하여 제출 단, 담당공무원은 보조금 정산 시 영수증 원본을 확인하여야 함(확인 후 반환)

## 잔여액 등의 반납

- 사업완료일을 기준으로 발생되는 잔여액(이자발생분 포함)은 최종 정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함
  - 이자발생분에 대한 정산은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반납

- 부가가치세, 수수료 등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없는 성격의 금액에 대한 환급이 발생할 경우, 그 금액을 반납하여야 함

#### 재무제표 제출

- 모든 마을기업은 마을기업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투명성 증진을 위해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의 재무제표를 해당 시·군·구에 제출하여야 함  
※ 자립형마을기업도 포함됨

#### 사업 변경 발생시 보고

- 마을기업은 주요사항\*을 변경하거나, 사업비를 변경 집행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획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기초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(서식7)  
\* 법인형태, 법인 대표, 주 사업장, 주 사업계획 등
- 사업을 중도포기 할 경우, 중도포기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함

#### 기타 협조 의무 등

- 사업비 지원종료 후에는 관리카드 작성에 협조하여야 하며, 관리 카드는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함 (서식12)  
※ 자립형 마을기업을 포함하며, '16년 이전에 지정된 마을기업도 포함됨
-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자치부의 설문조사, 정기점검, 특별점검 등에 따른 서류 작성, 제출과 검사에 협조하여야 함

## 7 자립 지원

-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, 마을기업 지원기관, 마을기업협회 등은 마을기업의 자립 지원을 위한 교육, 컨설팅, 모니터링, DB 관리 등을 성실히 하여야 함

## 8 지도 · 점검 및 관리

### □ 정기 지도 · 점검

- 기초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 될 수 있도록 현장방문 지도·점검 실시
  - 해당 연도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마을기업은 분기별 1회, 자립형 마을기업은 반기별 1회
  - 해당 연도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마을기업은 매 분기별, 그 외 자립형 마을기업은 반기별로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관리카드(점검표 포함) 작성, 광역자치단체장에 제출(익월 10일 이내)(서식 12)

### □ 특별점검

- 기초자치단체장은 민원이 발생하거나 부정수급 등이 우려되는 마을 기업에 대해 정기점검 외에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
- 기초자치단체장은 보조금 지원 종료(1차년 또는 1·2차년 최종지원 종료)후 5년 경과된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존속여부 등 판단을 위해 실태점검을 실시하여야 함.  
※ ‘16년 이전에 지정된 마을기업도 포함됨, 실태점검 후 환수 및 반환된 물품 등의 처리, 마을기업의 지정취소 절차(30~31쪽)에 따라 처리
- 기초자치단체장은 특별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시·도 및 행정자치부에 제출해야 함

### □ 위반사항 조치 기준

-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비를 보조받는 마을기업이 시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주의 및 시정지시, 경고, 약정해지 및 환수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

- 마을기업(자립형 마을기업 포함)이 지방자치단체의 시정조치 후에도 위반을 계속할 경우 지원 보조금 환수, 지정취소 및 사업 참여 제한을 할 수 있음

#### \* 마을기업 시행지침 위반사항 조치 기준

##### ❖ 일반기준

- 주의 및 시정지시 후 15일 이내 불이행 시 경고
- 경고 후 30일 이내 불이행 시 약정해지 및 환수
- 마을기업의 귀책사유로 약정해지된 경우 향후 2년간 동 사업 참여제한
  - 보조금 부정수급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, 제41조, 제42조에 의한 벌칙규정 적용 및 마을기업 신청 원천 배제
  - 타 지방자치단체, 지원기관 등 관련 유관기관에 부정수급 사실 통보 및 유사사업 참여금지 조치

##### ❖ 세부기준

구 분	위반행위	조치기준
사업계획에 관한 사항	• 사업계획의 일부를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- 일정 미준수, 임의 일정 변경 등	• 주의 또는 시정지시
	• 사업의 주된 내용을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	• 시정지시 또는 경고
	• 사업계획 허위 이행하거나 고의·과실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	• 경고 또는 약정해지
	• 2년 이상 휴업하는 경우	• 경고 또는 약정해지
예산사용에 관한 사항	• 예산 관련 경미한 문제가 있는 경우	• 주의 또는 시정지시
	•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 예산을 지출한 경우	• 시정지시 또는 경고
	• 예산 계획 및 활용상에 허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의 문제가 있는 경우	• 약정해지 • 참여제한, 고발 •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에 부정수급 사실 통보
회계관리에 관한 사항	• 사업비 관리통장, 회계장부, 지출결의서, 영수증이 상호일치하지 않은 경우	• 주의 및 시정지시
마을기업의 공공성	• 공직선거 관여금지를 위반한 경우	• 약정해지
	• 사회공헌 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	• 시정지시 또는 경고
기타	• 지도점검에 협조하지 않거나, 지침, 약정서 등을 위반한 경우 • 지방자치단체의 보완지시에 불응한 경우	• 약정해지
	• 기타 관련서류 미비 등	• 주의 및 시정지시

## □ 지급물품 등의 관리

-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 등은 임의로 매각, 양도, 교환 등이 불가
  - \* 물품 등 : 시설 및 설비, 인테리어 등 부동산도 포함
- 사업 실행계획서 상 미기재한 물품 등의 취득은 불가
  - 사업계획 변경에 해당될 경우 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
    - \* 해당 기초자체단체에 견적서를 첨부한 계획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협의하거나 시·군·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취득 가능
-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 등을 내용연수기간 동안 목적 외 사용, 미사용 방치한 경우 즉시 환수
  - \*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에 의한 조달청 고시의 내용연수에 따르며 조달청 고시하에 정해지지 않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은 자치단체에서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

## □ 환수 및 반환된 물품 등의 처리

- 환수·반환된 물품 등은 최대한 다른 마을기업에 이관하도록 노력해야 함
  - 이관이 어려울 경우,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국고, 지방자치단체, 마을기업 참여자로 귀속시킬 수 있음
  - 매각의 실익이 없거나 불가능한 경우, 물품관리법 제38조의 불용품의 양여에 따라 처리함
    - 매각의 실익에 대한 판단은 전문성을 가지는 외부전문가 1인 이상의 소견을 첨부하여 처리함
- ❖ 물품관리법 제38조 (불용품의 양여)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불용품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, 교육·연구기관, 국가보훈단체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.  
② 제1항의 교육·연구기관, 국가보훈단체 및 비영리단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기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,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(행정자치부 홈페이지→업무안내→지방재정 세제실→공유재산물품 관리→29번)에 준하여 처리함  
※ 마을기업 물품 환수 등 세부절차 등에 대하여 필요시 행정자치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

## **9 사업비 집행 실적 평가**

### **□ 최종평가**

- 광역자치단체장은 사업종료(매년 12월 말) 후 다음해 2월 중 사업 성과 보고를 위한 최종 평가를 실시하고, 부적격 사업비가 발견될 시 환수조치
- 평가결과는 실적보고서, 정산보고서, 보조금 정산검사서와 함께 시·도에서 취합하여 행정자치부에 제출

## **10 마을기업의 지정취소**

### **□ 마을기업 지정취소권자**

- 지정취소권자는 지정권자인 행정자치부 장관
- 지정취소의 절차는 약정 당사자인 기초자치단체장이 진행하여야 함

### **□ 마을기업 지정취소 사유**

- (포기 및 폐업) 마을기업 스스로 사업을 포기 한 경우
- (약정해지) 기초자치단체장에 의해 마을기업 사업 약정이 해지 된 경우
- (규정위반) 관련 법률(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), 지침(마을기업 요건 불충족 등), 약정 등을 위반하거나 행정자치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시정조치 요구에 불응한 경우
- (사업불능) 사업수행능력이 상실되거나 사업의 영위가 불가능하다고 행정자치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

\* 2인 이상의 외부전문가의 소견을 첨부할 것

## □ 마을기업 지정취소 절차

- ① 지정취소 요청서 제출 또는 지정취소 사유 발생
- ② 즉시 기초자치단체 담당자 및 마을기업 지원기관이 현장을 실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정취소 절차 추진여부를 판단함
  - 필요한 경우, ‘시·군·구 심의위원회’를 개최할 수 있음
- ③ 이후 7일 이내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정취소 결정 통지를 광역자치단체를 거쳐 행정자치부에 요청해야 함
  - 광역자치단체는 자체 없이 행정자치부에 그 요청을 전달해야 함
- ④ 행정자치부는 지정취소 사유가 타당한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마을기업 지정취소 결정을 통지해야 함
- ⑤ 지정취소 결정을 해당 마을기업이 통지 받은 날 지원 약정이 취소된 것으로 보며, 이로부터 14일 이내에 최종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지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고, 마을기업 인증서를 반납하여야 함
- ⑥ 기초자치단체는 보조금 및 물품 등 관련 처리 실시
  - 고의·과실 등 중대한 귀책사유\*가 마을기업에게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절차(24쪽)에 따라 처리, 이미 집행된 금액 포함 보조금 전액 및 지급 물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함
  - \* 고의로 마을기업과 마을기업의 재산을 양도·교환·대여한 경우,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
  - 그 이외의 경우에는 보조금은 잔액을 반납 받아 분담률에 따라 세외수입에 납입하고 필요한 경우 회계감사 실시함, 물품 등은 환수 및 반환된 물품 등의 처리 절차(30쪽)에 따라 처리
- ⑦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 지정취소에 따른 처리 결과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하고 관리대상 통계에서 제외



## 1 新유형 마을기업

### □ 육성 배경

- 새롭게 등장하는 지역 공동체 이슈에 대응하고 창의적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끄는 도시형 등 신유형 마을기업 필요
- 청년층 및 퇴직 전문가 등 인력자원, 향교·서원 등 문화자원, 폐교, 폐가, 폐공공시설과 같은 시설자원 등 다양한 지역자원의 적극 활용 필요
- 마을기업의 이미지 제고 및 인지도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창조적 마을기업 필요

### □ 新유형 마을기업 예시

- (인력자원 활용) 청년창업가, 퇴직전문가, 경력단절여성 등의 재능을 지역의 공익실현을 위해 활용하는 마을기업
- (공공자원 활용)
  - 향교·서원 등 문화재, 폐교 등 공공시설을 활용·운영하는 마을기업
  - 산악, 호수, 특수지형 등 지역의 범위 안에서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원을 독과점적으로 활용하는 마을기업
- (전문기술 활용) IT, 디자인 등의 기술을 지역 공공자원의 이용 등에 접목·활용하거나 지역 고유기술을 보존·육성하는 마을기업

## □ 육성 방안

- 마을기업 사업유형의 참신성 및 기대되는 파급효과 등을 중점 선정 기준으로 하고, 가점 부여
- 지방자치단체에서는 新유형 마을기업을 예비 마을기업으로 적극 육성
- 新유형 마을기업 창업 희망자 대상 권역별 심화 교육 및 멘토링 실시
- 커뮤니티 벤처 방식의 인큐베이팅 시스템 도입 가능
- 차별적 지원, 관리 방안 마련

## 2 예비 마을기업

### □ 선정배경

- 마을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준비된 마을기업을 지원하여 정체성과 사업성을 갖춘 우수한 마을기업으로 육성 지원

### □ 선정 및 관리

-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
- 신규 마을기업 선정기준에 준하여 적용하되 자치단체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
- 1천만원 한도내 보조금 지원과 컨설팅(우수마을기업과 연계 등), 교육 등 지원, 향후 신규 마을기업으로 신청시 가점 부여
- 예비마을기업 공모 신청시 마을(단체) 등이 가능하나,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시 법인으로 등록하여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며 보조금은 마을기업 설립 준비 등을 위한 경상적경비\*로 사용하여야 함
  - \* 교육, 기본 및 전문 컨설팅, 상품개발, 마케팅 준비 등(시설비 사용 불가)
  - (광역)공모, (기초)접수, 현지실사 및 적격검토, 광역자치단체에 추천→(광역)심사 및 지정→(기초)약정체결 및 보조금교부, 정산, 모니터링
- ※ 약정서, 정산 서식 등 관련서식은 마을기업 지정에 따른 서식에 준하여 사용

### \* 설립준비를 위한 지자체 자체계획 예시

- ▶ 육성기간 : 최소 3개월 이상\* \*‘17년 하반기(7월경) 선정 이후 ~
- ▶ 대상 :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마을(단체)
- ▶ 교육내용
  - 마을기업 육성사업 이해, 마을리더 육성, 공동체 만들기 등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환경(여건) 만들기
  - 지역자원 발굴, 상품화, 홍보·마케팅 사업계획서 작성 등 자원개발 및 계획 수립
  - 기타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 등
- ▶ 교육방법 : 마을주민 교육, 컨설팅, 선진지 견학 등

## □ 지원혜택

- 마을기업 선정 시 가점부여
- 지방자치단체의 마을기업 육성노력을 익년도 예산배정과 연계

## 3 유통형 마을기업

## □ 육성 배경

- 마을기업 제품의 안정적인 판로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을기업 제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유통형 마을기업 설립 추진

## □ 지정 개요

- (설립단위) 광역 시·도 단위로 1개소씩 설립
  - ※ 각 지자체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인근 시·도와 협조하여 권역별로 설립 가능
- (설립·운영 주체) 시·도 마을기업 협회
  - 시·도 단위 또는 권역별로 출자한 마을기업들(법인이 출자할 것)로 주주를 구성하여 유통형 마을기업의 책임과 성과를 공유 할 수 있도록 추진

- \* 마을기업 이외자의 참여인원 및 출자비율을 30% 이하로 허용
- \* 다만, 사업의 적극 추진, 새로운 사업 방식의 개발, 새마을금고 등 새로운 주체의 참여 등을 위해 행정자치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자비율에 대한 제한을 달리할 수 있음
- 유통전문가 1인 이상이 반드시 운영에 참여하여야 함

○ (의사결정기구) 운영위원회 설치

- 유통형 마을기업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함
-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출자한 마을기업 대표 1/2 이상과 행자부 추천 위원 1인, 해당 기초자치단체 담당 과장 등으로 구성함

○ (지정요건) 법인 여부, 마을기업 참여 적극성, 자발적 추진 의지, 사업성 및 지속가능성

○ (판매제품) 해당 시·도 및 전국의 마을기업 제품 중 경쟁력 있는 마을기업 제품

- \* 효율적 운영을 위해 상품군이 겹치지 않은 선에서, 마을기업 이외의 상품을 30% 이하로 허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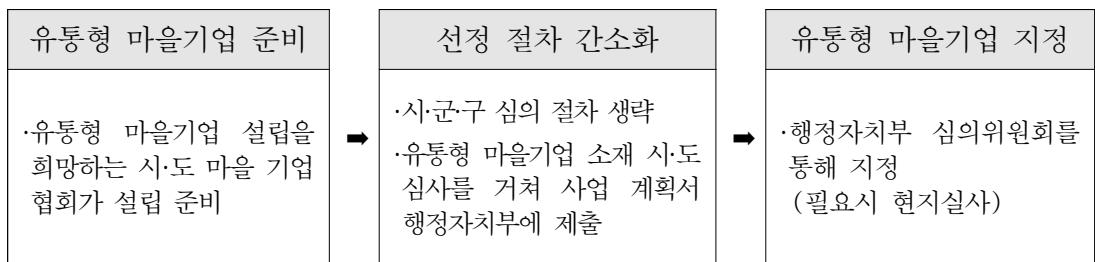
○ (지원금액) 매장 규모, 위치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설립비용이 차이가 있으므로 시·도별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지원 규모 확정

- 보조금의 50% 이상 지방비 부담, 보조금의 20% 이상 자부담
- 수요조사를 통해 지방비 및 사업자 부담이 가능한 곳에 한정, 국비 지원

❖ 유통형 마을기업의 매장 디자인, 간판, 로고 등은 행정자치부 가이드 라인에 따라야 함

## □ 지정절차

- 유통형 마을기업 설립 추진 시·도 마을기업 협회에서 사업계획서를 해당 시·도에 제출, 현지실사 및 심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에 제출, 행정자치부에서 최종 심사



## 1 지원기관 평가

### □ 평가개요

- (대상기간) 해당연도 계약일 ~ 9월말까지 실적
  - (평가시기) 매년 10월
  - (평가방법) 정량평가 + 정성평가
    - (정량평가) 컨설팅, 교육, 홍보(로고 활용실적 등), 판로지원, 만족도
    - (정성평가) 사업수행기관의 능력, 특화성
- ⇒ 우수지원기관으로 선정시(1~5위) 장관상 수여, 익년도 연속 계약 가능
- ※ 마을기업 시도 지원기관 세부 평가계획은 별도 통보 예정

## 2 지방자치단체 평가

### □ 평가목적

- 광역자치단체의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추진실적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해당 연도 사업을 피드백하고, 효과적인 마을기업 육성사업 체계 마련

### □ 평가개요

- (대상) 17개 시·도의 해당연도 9월말까지 실적
  - (평가시기) 매년 10월
  - (평가방법) 지자체에서 제출한 관련 자료에 의한 서면분석(필요시 현지실사)
  - (평가항목) 마을기업 매출, 컨설팅, 교육 등 마을기업 육성 노력
- ⇒ 평가결과는 해당 지자체에 대한 다음 연도 국고보조금 예산 배정에 반영
- ※ 마을기업 시도 지원기관 평가시 평가항목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추진실적 등 종합 평가

## 1 사업 예산 집행 기준

### □ 사업 실행 계획 준수

- 예산은 약정 체결 시 제출한 사업 실행계획서 상의 사업비 집행 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함
-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, 사업비를 변경 집행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획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기초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(서식 11)
  - 사업비 변경에 따른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함
- 기초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마을기업 내부 품의를 통해 조정 가능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비목 내 금액조정으로 한정함
  - 단, 항목 신설은 반드시 승인 필요
    - 예) 일반운영비 내 인쇄비 → 강사비로의 조정의 경우, 내부 품의서 첨부하여 변경 내용 관리 필요, 기초자치단체장 승인 필요 없음
    - 일반운영비 → 시설비로의 비목 간 조정의 경우, 기초자치단체장 승인 필요
- 사업완료 시점 1개월 전에는 예산 사용계획을 변경할 수 없음
- 자부담 예산을 국비로 변경하여 지출할 수 없음
  - ※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4조(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) 제2항 및 제3항」, 「지특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」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 마을기업 지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예산 불용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행정자치부 협의를 거쳐 판로지원·컨설팅 등에 활용 가능

## □ 집행기간 준수

- 사업비는 사업약정일 이후부터 집행 가능하며 사업약정일 이전에 집행된 비용을 사업비로 인정 불가(원인행위는 지정 통보 이후 가능)
  - 위반할 경우 최종정산 시 보조금은 환수조치하고, 자부담은 불인정 처리
- 사업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마감일('17.12.31)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함. 다만, 4분기 사업선정 등으로 회계연도 ('17.12.31)내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행자부 협의를 거쳐 이월 가능
  - \*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3조(예산의 이월)」, 「지특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」에 따라 사전에 행정자치부 협의를 거쳐 예산 이월 가능
  - 보조금의 집행 잔액 및 예금이자는 「국가균형발전특별법」 및 「지역 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」, 「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반납조치 하여야 함

## □ 별도의 통장과 회계장부로 사업비 관리

- 사업비는 보조금통장, 자부담통장, 수익금통장으로 나누어 관리하되, 반드시 법인명의 통장으로 개설하여야 함
-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 잔고(액)를 정리한 후 사용하여야 함

## □ 목적 외 사용 불가

- 마을기업 육성사업 목적과 관련이 없는 경비 및 사업과 무관한 현금성 경비(성금, 진료비, 시상금, 장학금 등)는 사업비로 편성 및 지출할 수 없음
  - 위반할 경우 최종정산 시 보조금은 환수조치하고, 자부담은 불인정 처리

## □ 「국고보조금 전용카드」 의무 사용

- 거래내역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감안하여, 마을기업은 보조금 및 자부담 입금계좌와 연계된 은행의 「국고보조금 전용카드(e나라도움 카드)」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함

## □ 사업비 집행시 부가가치세 등 처리

※ 과세사업자만 적용

- 마을기업 사업비(보조금 및 자부담)로 공급가액의 집행은 가능하나, 세액(부가세, 수수료 등) 집행은 불가 \* 세액은 수익금으로 집행
  - 다만, 불가피하게 사업비와 세액을 함께 집행한 경우 수익금 계좌에서 사업비 계좌로 대체입금 반환하고, 반환된 세액은 사업비로 집행 가능

## 2 회계서류 작성 · 관리 기준

### □ 각종 회계서류 작성 및 보관

- 회계장부는 각 단위 사업별로 내부품의서 또는 지출결의서 등의 내부 양식에 지출일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작성하여야 함
  - 회계장부 작성 시 보조금과 자부담을 분리하여 작성하여야 함

\* 회계장부 작성 예시

사업명 : 한국전통공예공방  
단위 사업명 : 공예품 홍보마케팅

인출일자	인출액	비목	내역	지출일자	지출액	지급처	지출결의번호	비고
7.5	330,000	홍보비	호스팅	7.5	330,000	아이호스팅	07-05-01	신용카드
7.5	770,000	홍보비	체험콘텐츠개발	7.5	770,000	(주)마을	07-05-02	신용카드
7.8	3,300,000	홍보비	쇼핑몰 제작	7.8	3,300,000	행복디자인	07-08-01	신용카드
7.10	1,650,000	홍보비	쇼핑봉투 제작	7.10	1,650,000	대한기획	07-10-01	신용카드
7.23	2,200,000	홍보비	리플릿 제작	7.23	2,200,000	한국인쇄	07-23-01	신용카드
7.28	1,300,000	인건비	상시근로자 인건비	7.28	1,300,000	홍길동	07-28-01	계좌이체
월계	9,550,000				9,550,000			
누계	9,550,000				9,550,000			

\* '지출결의번호'는 월-일-일련번호 순으로 작성

- 증빙서류도 회계장부 작성과 동일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편철하여야 하며, 편철 시 보조금과 자부담 지출 증빙서류를 분리하여 편철하여야 함
  - 회계 관련 영수증, 규격이 일정하지 않은 증빙자료 등은 「A4」용지에 부착·편철하여야 함

\* 증빙서류(영수증, 입금표 등) 편집 서식 예시

재원구분 :  보조금  자부담

사업명 : 다남동의 맛 (표고버섯 재배 및 장 담그기)

지출내역 : 홍보 리플렛

지출금액 : 440,000원

지급처 : 032디자인 주식회사

지출결의서 번호 : 07-15-01 인쇄비

전자세금계산서			승인번호	20150715-10000000-00027302		
등록번호 (법인명) 032디자인 주식회사	121-81-97738	증사업장 번호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 25, 201 (송의동, 송의빌딩)	등록번호 (법인명) 다남동주식회사	121-82-13389	증사업장 번호 인천 남구 인하로119번길 13	증명
사업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 25, 201 (송의동, 송의빌딩)	업체 제조업	증목 총판	업체 제조	증목		
이메일 032pro@naver.com	이메일 73051710@naver.com	이메일 73051710@naver.com	이메일 73051710@naver.com	이메일 73051710@naver.com	이메일 73051710@naver.com	이메일 73051710@naver.com
작성일자 2015/07/15	공급가액 400,000	세액 40,000	수경사유			
비고	월	일	품목	규격	수량	단가
	07	15	마을기업브로셔			400,000
						40,000
합계금액 440,000	현금	수표	마음	외상미수금	이 금액을 (청구) 함	



본 인쇄물은 국세청 e세로([www.esero.go.kr](http://www.esero.go.kr)) 시스템에서 발급 또는 전송 입력된 전자(세금)계산서입니다.  
발급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e세로 홈페이지 우측상단의 “제3자 전자(세금)계산서 조회”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
- 증빙영수증은 전자세금계산서, 일반세금계산서, 일반계산서, 카드전표, 기계식현금영수증, 현금수령증을 원칙으로 함
  - 간이영수증 발급은 원칙상 불가하나, 불가피한 경우, 기초자치단체의 승인을 얻어 사용함
    - ※ 이 경우 기초자치단체는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간이영수증만 인정하되, 사업비의 2% 이내 범위 내에서 1건당 3만원 이하 인정
- 회계 장부 및 증빙서류는 사업완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간 중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함
- 증빙서류는 대표자의 「원본대조필」 날인을 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

## □ 사업비의 품의 및 지출

- 모든 지출은 지출품의서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결재한 후 집행하여야 함
  - 계획단계에서 지출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지출품의서를 작성(추정 가격으로 작성)하여 결재를 받고 그 내용 범위 내에서 계약 또는 구매
  - 사후에 실제 소요된 경비대로 지출결의서를 작성, 결재를 받은 후 집행
  - 사업비는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집행되어야 하며, 지출결의서에는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
- 사업비 통장, 회계장부, 지출결의서, 증빙영수증 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
  - 단, 금융기관 부채, 장기간 야외사업 진행 등 부득이한 경우 예외 인정 가능
- 지출원인행위(계약, 물품구매 등)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지출할 수 없음
- 보조금통장 예금은 가급적 지출결의서상 일자별·항목별 인출을 원칙으로 하고, 보조금 전액을 일괄 인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함
- 현금을 인출 사용 후 사후에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금지함
  - 위반할 경우 최종정산 시 보조금은 환수조치하고, 자부담은 불인정 처리

## □ 증빙자료의 수취

- 사업비를 계좌이체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체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함
  - 위반할 경우 최종정산 시 보조금은 환수조치하고, 자부담은 불인정 처리
- 각 사업장 단위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송금은 반드시 계좌이체하여야 함
- 법인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 시 반드시 전자 세금계산서를 수취
- 강사비·회의비·원고비·자문비·인건비 등 각종 인건비성 경비의 지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계좌이체(인터넷뱅킹, 창구이체, CD이체, 폰뱅킹)를 원칙으로 함
  - 건별 지급액 25만원 초과 시에는 관련 세액을 원천징수 후 수령자 계좌에 송금
  - 다수 건 일괄처리 시에도 25만원을 초과하면 원천징수 후 수령자 계좌에 송금
  - 원천징수 상황 발생 시, 이를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반드시 첨부

### \* 원천징수세액 계산법 예시

\* 강사료가 350,000원 경우, 원천징수세액

1) 전체 지급할 금액에서 필요경비 80%를 제외한 '기타 소득금액'을 산출함

$$350,000\text{원} - (\underline{350,000\text{원}} \times \underline{80/100}) = 70,000\text{원}$$

280,000원

2) 위 산출금액(70,000원)의 20%를 기타소득세로, 기타소득세의 10%를 지방소득세로 징수함

$$\{ \underline{70,000\text{원}} \times \underline{0.2(\text{세율})} \} + \{ \underline{14,000} \times \underline{0.1(\text{세율})} \} = 15,400\text{원}(\text{원천징수 세액})$$

14,000원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1,400원

\* 지출품의서 작성 예시

## 지 출 품 의 서

재원구분 :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보조금 <input type="checkbox"/> 자부담	담당자	사무국장	이사장	결재

지출 추정금액 : 금8,250,000원 (팔백이십오만원)

단위사업명	공예품 홍보마케팅	사업기간	2016. 00. 00 ~ 00. 00
-------	-----------	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

### 내 역

연번	지출내역				산출근거	비고		
	비목	적요	추정금액					
			공급가액	부가세				
1	홍보비	호스팅	300,000	30,000	330,000원 × 1년			
2	홍보비	체험콘텐츠개발	700,000	70,000	385,000원 × 2건			
3	홍보비	쇼핑몰 제작	3,000,000	300,000	3,300,000원 × 1식			
4	홍보비	쇼핑봉투 제작	1,500,000	150,000	660원 × 2,500개			
5	홍보비	리플릿 제작	2,000,000	200,000	220원 × 10,000개			
	합계		7,500,000	750,000		부가세포함		
관련계획서	1. 호스팅 견적서 2. 체험콘텐츠개발 계획서 및 견적서 3. 쇼핑몰 제작 계획서 및 견적서 4. 쇼핑봉투 및 리플릿 제작 계획서 및 견적서							

위와 같이 예산을 집행하고자 합니다.

2017. 00. 00

사업기관장 한국전통공예공방

\* 동일사업에 대해 여러 건을 품의하는 경우 1개 지출품의서에 일괄 품의 가능

\* 결재란 : 결재권자는 단체 형편대로 조정사용

\* 사업기간 : 해당 단위사업 개최일 또는 운영기간을 기재

\* 관련계획서 : 추진일정 등이 나오는 당초 사업계획서 등을 기재하고 사본을 별첨

\*지출결의서 작성 예시

## 지 출 결 의 서

재원구분 :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보조금 <input type="checkbox"/> 자부담	담당자	사무국장	이사장	결재

지출 금액 : 금1,100,000원 (일백일십만원)

발의 및 원인행위일	2016. 00. 00	지출부 기재	2016. 00. 00
------------	--------------	--------	--------------

### 내 역

지출결의 번 호	지출내역			지급처		지급방법	
	비목	적 요	금 액		상호(소속)	성명(대표)	
			공급가액	부가세			
07-05-01	홍보비	호스팅	330,000	30,000	아이호스팅	김대한	신용카드
07-05-02	홍보비	체험콘텐츠 개발	770,000	70,000	(주)마을	이민국	신용카드
	합계		1,000,000	100,000			

### 증빙자료

- 1. 품의서 / 법인 신용카드 영수증, 견적서, 호스팅 계약서, 사업자등록증사본
- 2. 품의서 / 법인 신용카드 영수증,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, 사업자등록증사본, 결과보고서(견본 및 사진 첨부)

위 금액을 인출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.

2017. 00. 00

사업기관명 한국전통공예공방

- \* 같은 날짜에 지출하는 경우 1개 지출결의서에 여러 건의 비목에 대한 일괄 지출결의 가능
- \* 결재란 : 결재권자는 단체 형편대로 조정사용
- \* 발의 및 원인행위 : 지출계획을 수립한 날짜 또는 품의한 날짜
- \* 지출부기재일 :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한 날짜(회계장부-지출부에 등재한 날짜)
- \* 증빙 : 각 비목별로 지출에 필요한 품의, 청구, 증빙자료를 기재하고 해당자료 별첨

### **3 비목별 회계기준 및 집행요령**

- ❖ 해당 비목 내의 금액 조정 이외의 예산 변경은 기초자치단체장의 승인 필요 - 비목 간 금액 조정, 항목 신설 등

#### **□ 인건비**

- 인건비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마을기업이 고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근로소득, 일용근로소득,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지급

※ 마을기업 대표, 부회장, 총무 등 법인등기부등본 상 이사, 감사 등 임원에게 수당 지급 불가

- 인건비의 지급은 약정체결 시 제출하는 사업 실행 계획서에 따라야 함

※ 증빙서류 : 근로계약서,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, 계좌이체영수증, 급여대장, 업무일지

#### **□ 공사 및 시설비**

-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각종 공사 및 시설설치와 관련된 지출 경비
- 시공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사본,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, 공사자료 (시행 전 및 시행 후의 공사 과정을 사진으로 첨부)를 첨부하고 사업비 집행 후 증빙영수증 구비

#### **□ 물품구입비**

- 사업 수행에 필요한 물품 구입 비용
- 구매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사본,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, 취득한 물품의 사진을 첨부하고 사업비 집행 후 증빙영수증 구비

## □ 재료비

- 판매 제품의 원료 및 부자재로 사용되는 생산 재료에 대한 지출 경비
- 거래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사본,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, 물품견본 또는 사진을 첨부하고 사업비 집행 후 증빙영수증 구비
- 생산 재료 구입처가 사업자를 등록한 업체가 아닌 지역 주민의 경우에는  
① 재료판매 확인증(판매자 주소, 전화번호 포함) ② 구입재료 관련 사진 첨부

## □ 일반운영비 : 홍보비, 임차비, 강사비, 회의참석비, 연료비, 시설장비 유지비, 기타운영비 등

### <홍보비>

- 마을기업 홍보 관련 인쇄물(광고홍보물 및 현수막 등) 제작에 대한 지출 경비
- 거래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사본,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, 물품견본 또는 사진을 첨부하고 사업비 집행 후 증빙영수증 구비

### <임차비>

- 사업수행에 직접 관련된 시설, 장소, 장비 등 임차에 관한 지출 경비
  - 임대업체의 사업자등록증사본,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, 임차물 자료 사진을 첨부하고 사업비 집행 후 증빙영수증 구비
- \* 임대업체(법인)와 계약이 어려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중개확인서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증빙자료로 구비

## **<강사비>**

- 사업수행 관련 강사비는 외래 강사에 한하여 지급하며, 마을기업 임직원에게는 지급 불가, 강사비 지급 시 교통비 별도 추가 지급은 불인정
- 강사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정보를 기재한 강의확인서 및 강사료 지급내역서, 이체확인증을 첨부(강의시간 기재 필수)하고, 강의 시 배포된 강의자료 등 유인물 사본 및 강의 사진 등 증빙자료 구비
- 강사비 지급은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계획수립 기준에 따라 중앙공무원교육원 또는 지방행정연수원의 강사수당 지급을 준용함

## **<회의참석비>**

- 전문가 회의 등 회의참가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며, 마을기업 임직원 또는 단순 청중 등 내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
- 세미나, 포럼 등의 토론비 및 발제비는 회의참석비 적용(강사수당 적용불가)
- 회의참석 수당은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
- 회의참석확인서, 회의참석비지급내역서, 이체확인증, 회의록, 회의 사진 등 증빙자료 구비

## **<연료비>**

- 생산(기계설비) 및 영업활동(영업차량 사용) 등과 관련된 유류 지출 경비

## **<시설장비유지비>**

- 사업장 및 시설장치 유지 및 수선 관련 지출 경비
- 거래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사본,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, 사진을 첨부하고 사업비 집행 후 증빙영수증 구비

## <국내여비>

- 사업 수행에 필요한 출장 관련 교통비(대중교통 또는 유류비), 숙박비, 식비의 지출 경비로만 사용 가능하며 소요되는 실 경비를 집행하고 출장결과보고서 첨부 후 증빙영수증을 구비
  - \* 근무지 내(20Km 이내) 출장 시에는 정액으로 지급하며 초과 시에는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함
- 자가 및 법인 차량 이용 시에만 유류비 지출이 가능하며 항공권 구매 시에는 이코노미 클래스 요금을 원칙으로 함
-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장기 출장, 출·퇴근성 이동 등 일상적인 업무를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음

## <기타 운영비>

- 사무용품비
  -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용 물품 관련 지출 경비
  - 거래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사본,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, 물품견본 또는 사진을 첨부하고 사업비 집행 후 증빙영수증 구비
- 소모품비
  - 사업수행에 필요한 소액 소모품 관련 지출 경비
  - 거래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사본,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, 물품견본 또는 사진을 첨부하고 사업비 집행 후 증빙영수증 구비
- 특근매식비
  - 사업 수행과 관련된 초과근무식대 및 음료, 다과 구입 관련 지출 경비
  - 현금 사용은 불가하며, 영수증 등 증빙자료 첨부
  - 식비는 1인 1식 8,000원

## ○ 영업비

- 외부와의 영업 활동 시 발생하는 식대 및 음료, 다과 구입 관련 지출 경비
- 현금 사용은 불가하며, 영수증 등 증빙자료 첨부

## ○ 공공요금

- 사업장 운영관련 공공요금(전기세 수도세 등), 및 각종 수수료(은행 거래 수수료 등) 관련 지출 경비

※ 기타 운영비의 총액은 사업비 총액(보조금+자부담) 대비 인정 한도액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·집행하여야 하며, 사업기간 중 월별로 균등하게 배분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
### \* 사업비 총액(보조금+자부담)대비 기타 운영비 인정 한도액

#### ◇ 총사업비(1천만원~1억5천만원)

- 1억 원 초과
- 5천만원 초과 ~ 1억원 이하
- 3천만원 초과 ~ 5천만원 이하
- 3천만원 이하

#### ◇ 인정 한도액(예산편성범위)(300만원)

- 300만원
- 전체 사업비의 3.0%(150만원~300만원)
- 전체 사업비의 4.0%(120만원~200만원)
- 전체 사업비의 5.0%(150만원 이하)

※ 최고한도는 300만원으로 하고, 산출된 기타운영비가 금액기준으로 하위 단계보다 적은 경우 하위단계 상한액과 동일하게 인정

## □ 마을기업 육성사업 예산편성 기준표

○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(지방행정연수원 기준 준용)

### 가. 일반강의 강사수당

구 분	대 상	지 금 액
특 별 강 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전·현직 장관(급)</li> <li>• 전·현직 대학총장(급)</li> <li>• 대기업 총수(회장)</li> <li>• 전·현직 차관(급)</li> <li>• 전·현직 기초자치단체장</li> <li>• 전·현직 광역자치단체장</li> <li>• 전·현직 국회의원</li> <li>• 국영기업체 사장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최초 1시간 40만원</li> <li>• 초과 매시간 30만원</li> <li>• 시간보상수당 30만원</li> </ul>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최초 1시간 30만원</li> <li>• 초과 매시간 20만원</li> <li>• 시간보상수당 20만원</li> </ul>
일 반 강 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대학교의 조교수 및 대학의 부교수 이상</li> <li>• 전·현직 지방의회의원(의장 포함)</li> <li>• 유명 예술인 및 종교인, 언론인</li> <li>• 정부출연 연구기관장</li> <li>• 기업·기관·단체의 임원, 중역</li> <li>• 판·검사 및 변호사, 변리사, 공인회계사, 감정평가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</li> <li>• 전·현직 3급 이상 공무원</li> <li>•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·현직 4·5급 공무원</li> <li>• 컨설턴트(석사학위이상 소지자)</li> <li>• 박사학위를 소지한 정부출연·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4년 이상 실무경력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최초 1시간 25만원</li> <li>• 초과 매시간 12만원</li> <li>• 시간보상수당 12만원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대학교의 전임강사 및 대학의 조교수</li> <li>• 전·현직 4·5급 공무원</li> <li>• 중소기업체 임원급</li> <li>• 기업·기관·단체의 부장급</li> <li>• 정부출연·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</li> <li>• 국가대표출신 체육활동 등 지도강사</li> <li>• 원어민 어학 강사</li> <li>•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최초 1시간 13만원</li> <li>• 초과 매시간 8만원</li> <li>• 시간보상수당 8만원</li> </ul>
3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전·현직 6급 이하 공무원</li> <li>• 외국어, 전산 등 강사</li> <li>• 체육,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지방 행정연수원 3년 이상 강의 경력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최초 1시간 8만원</li> <li>• 초과 매시간 5만원</li> <li>• 시간보상수당 5만원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체육,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최초 1시간 7만원</li> <li>• 초과 매시간 4만원</li> <li>• 시간보상수당 4만원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각종 교육운영(실기실습 등) 보조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최초 1시간 5만원</li> <li>• 초과 매시간 3만원</li> <li>• 시간보상수당 3만원</li> </ul>

## 나. 퍼실리테이터(FT) 수당

기준	대상	지급액
1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역량평가·역량교육 관련 7년 이상 경력자</li> <li>전·현직 4급(상당) 이상 공무원</li> <li>대학교의 조교수 및 대학의 부교수 이상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최초 1시간 15만원</li> <li>초과 매시간 11만원</li> </ul>
2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역량평가·역량교육 관련 5년 이상 경력자</li> <li>전·현직 5급(상당) 공무원</li> <li>대학교 전임강사 및 대학의 조교수 이상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최초 1시간 13만원</li> <li>초과 매시간 9만원</li> </ul>
3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역량평가·역량교육 관련 5년 미만 경력자</li> <li>대학교의 겸임강사 및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최초 1시간 11만원</li> <li>초과 매시간 7만원</li> </ul>

< 원고료 지급기준(지방행정연수원 기준 준용) >

## 가. 지급대상 및 지급한도

기준	세부 요건
대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</li> </ul>
대상원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2시간 이상 교과목 편성 및 교재편찬용 제출원고</li> <li>각종 세미나, 토론회 등 교육운영 주제와 관련된 제출원고</li> </ul>
지급한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강의 시간당 한글원고 A4 용지 6매분까지 지급</li> <li>강사 1인에 대한 1주(5일)간 원고료는 A4 용지 최고 40매로 제한</li> </ul>

\* 공무원인 외래강사의 경우 원고료 미지급

## 나. 원고 규격별 지급액

원고 형식	지급 규격	지급액
A4 용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글자크기 13p, 줄 간격 160%,</li> <li>상하여백 15, 좌우여백 25, 머리말·꼬리말 15</li> </ul>	1면당 13,000원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면 기준 300단어</li> </ul>	1면당 13,000원
파워포인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슬라이드 2면을 A4 용지 1면으로 산정</li> </ul>	2면당 13,000원
원고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200자 원고지 3.5매를 A4 용지 1면으로 산정</li> </ul>	3.5매당 13,000원

\* 원고 매수별 글자 수 등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20%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

## 다. 기타 원고 지급비율

구 분	기 준	지급 비율
기존 원고 활용	30% 미만 수정	미지급
	30 ~ 70% 미만 수정	50% 지급
	70% 이상 수정	100% 지급
A4 용지 1/2 이하	20줄 1면으로 환산	각 원고를 합산하여 지급
200자 원고지 5행 이하	10행을 1매로 환산	
참고문헌, 부록 등을 워드로 작성하여 제출		30% 지급
복사물, 표지, 목차, 간지		미지급

### ○ 여비 지급기준

국내여비	- 근무지 내(20Km 이내, 4시간 이하) - 근무지 내(20Km 이내, 4시간 초과) - 근무지 외(20Km 초과) - 식비(1인 1식)	- 10,000원 - 20,000원 - 실비정산 - 8,000원	토·일요일, 공휴일 숙박비는 기준단가의 20% 초과분 인정
	- 숙박비(1인 1실)	- 실비 * 상한액: 서울특별시 70,000, 광역시 60,000, 그 밖의 지역은 50,000	
국외여비	- 국외여비	- 실비정산	

## □ 예산집행 관련 서식

### 출장결과 보고서 작성 예시

#### 출장결과보고서

담당자	사무국장	사무총장	회장	결 재

출장자	홍길동	소속	○○	
출장지	부산			
출장목적	재료 구입처 모색			
출장기간	(출) 2017년 ○○월 ○○일 (착) 2017년 ○○월 ○○일			(박일)
비목	적요	금액	지급처	지급방법
교통비	열차표 (왕복)	100,000		신용카드
식대	출장 시 식대 지급	5,000	○○식당	신용카드
기타	음료수	800	-	현금
합계		105,800		
출장내용				
부산일대의 항아리 제작업체 답사 - 마을공업(부산시 사직동) - 다라팡공(김해시 장유면)				

### 재료판매 확인증 작성 예시

#### 판매 확인증

1. 사업명 :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000 사업(행사)
2. 일시 : 2017. 6. 21
3. 내용 : 장담그기용 국산통 40kg × 35,700원 = 1,428,000
4. 판매자 : 나 성 실
  - 생년월일 : 0000. 00. 00
  - 주 소 :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000 1410호
  - 연락처 : 02-1234-5678 / 011-1234-5678
  - 입금계좌 : 농협 100-200-3456789(나성실)

첨부 : 판매재료 사진 2매

2017. 6. 21

판매자 나 성 실 (서명)

### 강의확인서 작성 예시

#### 강 의 확 인 서

1. 사업명 :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000 사업(행사)
2. 강의일시 : 2017. 10. 5 15:00 ~ 17:00(2시간)
3. 강의장소 : 마을기업 회의실
4. 강의주제 :
5. 강사 : 나성실
  - 소속 및 직위 : 000연구소 소장
  - 생년월일 : 0000. 00. 00
  - 주 소 :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000 1410호
  - 연락처 : 02-1234-5678 / 011-1234-5678
  - 강사료 입금계좌 : 농협 100-200-3456789(나성실)

2017. 6. 21

강사 나 성 실 (서명)

## 회의참석 확인서 작성 예

### 회의참석 확인서

1. 회의명 :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000 사업 기획회의
2. 회의일시 : 2017. 10. 5 15:00~17:00(2시간)
3. 회의장소 : 마을기업 회의실
4. 참석자 : 나성실
  - 소속 및 직위 : 000연구소 소장
  - 생년월일 : 0000. 00. 00
  - 주 소 :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000 1410호
  - 연락처 : 02-1234-5678 / 011-1234-5678
  - 참석수당 입금계좌 : 농협 100-200-3456789(나성실)

2017. 6. 21

참석자 나 성 실 (서명)

## 회의록 작성 예시

### 회 의 록

1. 회의명 :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000 사업 기획회의
2. 회의일시 : 2017. 10. 5 15:00~17:00(2시간)
3. 회의장소 : 마을기업 회의실
4. 회의안건(또는 주제) :
5. 참석인원 : 총 00명(홍길동, 나성실 ...)
6. 회의내용(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기재)
  - 홍 길 동 :
  - 나 성 실 :
  - 김 ○ ○ :
  - 최 ○ ○ :

**강사비, 회의참석수당 지급내역서 작성서식 예시**

참석자 또는 강사명 (강사 등급)	강의 주제, 회의 명	강의, 회의일자 (시간)	강사비, 회의 수당 (A)	원천징수 공제액			실지급액 (A-B)	입금 계좌
				계(B)	소득세	주민세		

**참석자 명단 작성 예시**

**000 세미나 참석자 명단(또는 등록부)**

[2017.7.10. 00~00:00, ××마을기업 회의실]

연번	소속 및 직위	성명	참석자 서명
1	○○마을기업 대표	김○○	
2	○○대학 교수	이○○	
3	○○마을기업 총무	강○○	
4			

※ 참가자명단은 서명이 기재된 「참가자 등록부」로 대체 첨부 가능

# 관련서식

※ 주소/소재지는 도로명 주소를 기재

서식 1-1

## 신규 마을기업 사업신청서

법인명			조직형태 (설립일자)	협동조합(2015.3.3.)		
마을기업명						
대표자	성명 : 전화 : Email :		실무책임자	성명 : 전화 : Email :		
사업명						
사업목적	<input type="radio"/> 강원도 춘천의 문화자원인 OO향교 활용 <input type="radio"/>					
사업장소재지	※ 도로명 주소를 기재					
사업내용	<input type="radio"/> 요약제시 할 것 <input type="radio"/>					
사업비	총 천원(보조금 천원, 자부담 천원)					
구성원	총 명(대표자 나모범 외 명)					
임원	직위	성명	생년월일	자택주소	휴대폰	임기
	<u>반드시</u>	<u>모든</u>	<u>항목</u>	<u>기재</u>		
※ 회원, 출자자 명단 별첨						

위와 같이 「마을기업」 육성 사업을 신청합니다.

- 첨부서류 : 1. 사업계획서 1부  
2. 마을기업 회원 명단(출자금 기재) 1부  
3. 법인등기부등본 1부  
4. 정관 1부  
5. 법인 명의의 통장(자부담내역 정리) 1부  
6. 설립전 교육 이수 확인서 1부  
7. 기타 증빙서류 일체\*

\*사업 인·허가 가능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(토지이용규제확인원,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)

2017년 월 일

신청자(법인대표자) : (인 또는 서명)

시·군·구청장 귀하

## 2차년도 마을기업 사업 신청서

법인명			조직형태 (설립일자)		
마을기업명				협동조합(2015.3.3.)	
대표자	성명 : 전화 : Email :		실무책임자	성명 : 전화 : Email :	
사업명			1차지정년도		
사업목적	<input type="radio"/> 강원도 춘천의 문화자원 활용 <input type="radio"/>				
사업장소재지	※ 도로명 주소를 기재				
사업내용	<input type="radio"/> 요약제시 할 것 <input type="radio"/>				
사업비	총 천원(보조금 천원, 자부담 천원)				
구성원	총 명(대표자 나모범 외 명)				
임원  ※ 회원, 출자자 명단 별첨	직위	성명	생년월일	주택주소	휴대폰
	반드시	모든	항목	기재	

위와 같이 「마을기업」 육성 사업을 신청합니다.

- |        |   |  |
|--------|---|--|
| 첨부서류 : | 1. 사업계획서 1부<br>2. 마을기업 회원 명단(출자금 기재) 1부<br>3. 법인등기부등본 1부<br>4. 정관 1부<br>5. 법인 명의의 통장(자부담내역 정리) 1부 | 6. 전문교육 이수 확인서 1부<br>7. 실적보고서 1부<br>8. 정산보고서 1부<br>9. 재무제표 1부<br>10. 기타 증빙서류 일체* |
|--------|---|--|

\* 사업 인·허가 가능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(토지이용규제확인원,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)

2017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신청자(법인대표자) :

(인 또는 서명)

시·군·구청장 귀하

## 마을기업 사업계획서

### 1. 신청사업명 :

### 2. 사업 필요성

- 
- 

### 3. 사업개요

#### ○ 추진주체 :

- 공동체의 특성을 간단히 명시  
(예) 귀농인이 80%, 지역 실업계고 출신 청년 5명 포함)

#### ○ 사업내용 : 공공성, 지역성 등의 특징을 함께 설명

- 수익창출을 위한 세부사업(제품이나 서비스 단위별로) 내용 기재  
(예) 낙과를 활용한 사과즙 생산·판매를 통해 지역의 고령농민의 부가소득 창출)
- 

#### ○ 예상되는 지역 일자리 창출 내용 : 누구인지, 어떤 일자리인지, 몇 명인지 드러나게 작성

#### ○ 수익금 활용계획 : 수익금의 몇 %를 무엇에 쓴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, 지역사회 공헌 방안(금액환산)이 반드시 포함될 것

### 4. 기대효과

- 지역경제 활성화, 지역문제 해결 중심으로 기술
- 

(1쪽 이내)

## 5. 예산 계획

### ○ 사업별 예산 총괄

세부사업명	사업량	사업비(천원)			비고 (산출근거)
		계	보조금	자부담	
계					

### ○ 비목별 예산 총괄

비목	사업비(천원)			내역	비고 (산출근거)
	계	보조금	자부담		
경상 경비	인건비			*인건비/	
	일반 운영비			홍보비/	
				임차비/	
				강사비/	
				회의참석비/	
				연료비/	
				시설장비유지비/	
				국내여비/	
	재료비			*기타운영비/	
경상경비 소계				재료비/	
자본 경비	물건비 (물품구입비)				
	시설비 (공사 및 시설비)				
자본경비 소계					
합계					

## ○ 세부사업별 예산 계획 \* 세부사업별로 전부작성

### 1. A 사업

세부사업 내용	1) 필요성 2) 추진내용 3)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
신청금액 산출근거	
기대효과	
추진일정	1)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

### 2. B 사업

세부사업 내용	1) 필요성 2) 추진내용 3)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
신청금액 산출근거	
기대효과	
추진일정	1)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

## 6. 3년간 수입 및 지출계획서(2017년~2019년)

※ 해당 계획은 사업비(보조금+자부담)을 제외한 금액으로 작성 할것

### ○ 2017년도 (작성 예)

구분	세부항목		금액추계	비고 (단가×수량 등 구체적인산출근거)
수 입	매출	제품 1(a)		
		제품 2(b)		
		서비스 1(c)		
		기타사업(d)		
	매출합계(A) (A= a+b+c+d)			
지 출	매출 원가 (인건비제외)	재료비 등	제조업	원가율: %
		외주가공비	제조업	
		상품매출원가	단순유통판매업	
	일반 비용	인건비(상근)		
		인건비(비상근)		
		보험료 등		
		감가상각비	장비, 차량, 시설 등 자본경비 총 비용의 20%	
		개발비 등		
		수도광열통신비		
		세금등		
		임차료		
		광고선전비		
	기타			
총지출 (B)				
순이익(C), (C=A-B)				

○ 2018년도 (작성예)

구분	세부항목		금액추계	비고 (단가×수량 등 구체적인산출근거)
수입	매출	제품 1(a)		
		제품 2(b)		
		서비스 1(c)		
		기타사업(d)		
	매출합계(A) (A= a+b+c+d)			
지출	(인건비제외)	재료비 등	제조업	원가율: %
		외주가공비	제조업	
		상품매출원가	단순유통판매업	
		인건비(상근)		
	일반 비용	인건비(비상근)		
		보험료 등		
		감가상각비	장비, 차량, 시설 등 자본경비 총 비용의 20%	
		개발비 등		
		수도광열통신비		
		세금등		
		임차료		
		광고선전비		
		기타		
	총지출 (B)			
순이익(C), (C=A-B)				

○ 2019년도 (작성 예)

구분	세부항목		금액추계	비고 (단가×수량 등 구체적인산출근거)
수입	매출	제품 1(a)		
		제품 2(b)		
		서비스 1(c)		
		기타사업(d)		
	매출합계(A) (A= a+b+c+d)			
지출	매출 원가 (인건비제외)	재료비 등	제조업	원가율: %
		외주가공비	제조업	
		상품매출원가	단순유통판매업	
	일반 비용	인건비(상근)		
		인건비(비상근)		
		보험료 등		
		감가상각비	장비, 차량, 시설 등 자본경비 총 비용의 20%	
		개발비 등		
		수도광열통신비		
		세금등		
		임차료		
		광고선전비		
	기타			
	총지출 (B)			
순이익(C), (C=A-B)				

## 7. 마을기업의 특성

### ○ 홍보 · 마케팅 등 특별한 전략이나 강점

- 예> 국토마트에 연 3,000개 납품 계약, 연방문객 3만명인 캠프장 인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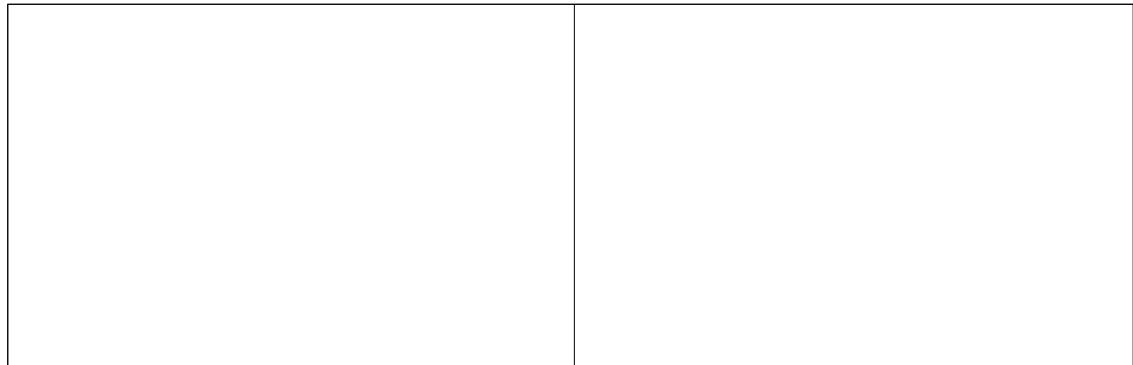
### ○ 2차년도 사업의 특징(1차년도 사업과의 연계성과 발전성) \* 2차 지원 신청시만 작성

- 예> 종이 문구류 제작 위주에서 광고, 이벤트 사업으로 확장

### ○ 2차 지원 탈락 사유와 보완 내용 \* 2차 지원 재신청인 경우만 작성

- 예> 1차년도 사업과의 연계성 부족으로 탈락, 이번에는 1차년도 사업의 특성인 ‘지역 유휴자원인 폐교의 공간 활용’ 분야를 강화하여 체험활동 작업장으로 활용 추진

### ○ 사업장 위치도(관련사진)



서식 3

\* 임의 항목 삭제 금지, 필요시 가로 편집 가능

### 마을기업 회원 명단

연번	성명	생년 월일	주소	연락처	출자금액 (원)	역할 (업무)	대표자 와의 관계	정보 제공 동의 여부	사업계 획동의 여부
1								○	친필 서명
2								○	친필 서명
3								○	친필 서명
4								○	친필 서명
5									친필 서명
6									친필 서명
7									친필 서명
8									친필 서명
9									친필 서명
10									친필 서명
합계									

위와 같이 마을기업 회원, 출자금액, 정보제공 동의여부 및 마을기업사업 계획 동의여부를 확인합니다.

2017. . .

신청자(법인 또는 단체) 대표자 : (인 또는 서명)

서식 4

## 마을기업 실적보고서

### I. 사업개요(요약)

법인명		마을기업명	
사업명			
사업기간	20 . . . ~ 20 . . .	사업장 소재지	
사업비	총 천원	보조금	천원(비율%)
		자부담	천원(비율%)
사업목적	<input type="radio"/> (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) - -		
사업 내용	<input type="radio"/> (주요 내용을 간단히 기재) - -		
지역사회 공헌내용	<input type="radio"/> (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자세하게 기술, 금액 환산) - -		
추진실적 및 사업성과	<input type="radio"/> 일자리 창출 00명(상시근로자 00명, 선택적 근로자 00명) <input type="radio"/> 총 매출액 : 000 천원 *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기술 - 감말랭이 판매 : 000천원 - 감 쥬스 판매 : 000천원		

## II.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

세부사업	사업계획	추진실적	사유
감말랭이 판매	하나로 마트 5천개 판매 온라인판매 5천개 판매	국토 마트 : 3천개 판매 온라인 판매 - g마켓 : 1천개 판매 - 옥션 : 3천개 판매 전남 유통형 마을기업 납품 : 2천개	하나로 마트 입점 불가

### < 작성요령 >

-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·도식화하여 작성  
(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)
- 개별 사업별로 상세히 추진실적을 작성

## III. 사업추진성과

- 보조금 지원사업 성과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기술
  - 자립경영 가능성, 일자리 창출 실적 등을 중점적으로 기술
  - 지원기관,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실시한 교육참여 실적을 기술

#### IV. 지역사회 공헌 성과

-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가급적 자세하게 작성
  - 일시, 장소, 금액(환산액) 등 자세하게 기술
- 지역사회 파급효과 등 예상되는 효과 분석
- 사진, 보도내용 등 증빙 첨부

#### V. 자체평가

-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(가급적 사례를 구체적으로 예시)
-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,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
-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마을기업의 계획

#### VI. 건의사항

--	--	--	--	--

#### VII. 추진사업 성과물(자료목록)

번호	자료유형	성과물 명칭	수량	비고
1	보고서	-----		
2	발간책자	-----		
3	프로그램			
4	포스터			
.	.			
.	.			

#### 〈자료유형〉

- 보고서, 발간책자
- 사업 관련 영상, 사진 등 미디어 자료
- 뉴스레터, 리플렛, 기타 사업 홍보물
- 언론보도 자료 등

### VIII. 예산집행 실적

#### 1. 총괄

구분	총사업비	지원금액(A)	지출금액(B)	잔액(A-B)
계				
보조금				
자부담				

#### 2. 예산 세부집행 현황

사업항목별	총예산	집행금액			구체적 내역
		계	보조금	기타	
총계					

※ 최종결과 보고시 VIII. 항목은 정산보고서로 대체 가능

### IX. 향후 추진계획

1. 사업추진기간 : 20 년 월 일 ~ 20 년 월 일

#### 2. 사업추진 계획

사업명	추진일정	세부추진내용	소요예산
			계

※ 향후 추진될 주요 사업내용을 상세히 기입

년 월 일

법인명 (인)  
대표자 (인)

# 2017년 마을기업육성사업 정산보고서

○ 법인명 :

○ 사업명 :

○ 사업비 : 원(보조금 , 자부담 )

## 법인명 [직인]

- |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|
| ○ 실무책임자 : 직위  | 성명  |        |
| ○ 연락처 : 전화    | FAX | E-mail |
| ○ 주소 : (우편번호) |     |        |

## I. 사업비 집행현황

### 1. 정산총괄표

(단위 : 원)

구 분	예산액(총사업비)(A)	집행액(B)	집행잔액(A-B)	비 고
계				
보조금				
자부담				

## II. 보조금 집행 현황

### 1. 지출일자별 집행내역

(단위 : 원)

통장 인출 일자 (순)	인출액	지 출 내 역									지출 결의 번호	비고 및 증빙 유형
		사업 (세부) 분야	비목	내역	지출 일자	지 출 액				지급 처		
계						계	공급가액	부가세	부가세 대체입금일			
<예시> 2017-09-01	330,000	판로 개척	인쇄비	홍보전 단제작	2017-09-01	250,000	227,270	22,730	2017-09-3	17-01-01	세금 계산서	
		사 무 용품비		전산인 크구매	2017-09-01	60,000	54,540	5,460	“	17-01-02	신용 카드	
		여비	시장조 사여비		2017-09-01	20,000	20,000	-		17-01-03	출장 보고서	
<예시> 2017-09-03	500,000	제품 생산	재료비	배추 구매	2017-09-03	500,000	500,000	-		17-03-01	판매 확인증	

### ※ 작성방법

- 1) 통장 인출일자와 인출액은 통장에 기재된 출금날짜와 금액을 일자별로 기재
- 2) 지출내역은 사업(세부)분야 지출액을 비목별·일자별로 나누어 기재
- 3) 보조금 통장에서 부가가치세 집행 불가(수익금통장에서 월별 정산 등 대체  
입금 조치)

\*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는 금액은 수익금에서 집행하여야 하며, 사업비에서 집행한 경우에는 수익금에서 사업비로 대체입금하여 반환하여야 함

#### 4) 지출결의서 일련번호 부여

- 지출결의서(17-10-01): 월별(01,02,03...), 일자별(01,02,03...), 일련번호(01,02,03...)

5) 비고 : (세금)계산서, 법인 신용카드(전표), 현금영수증, 간이영수증, 재료판매확인증, 출장결과보고서 등 증빙서

## 2.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 사유

(단위 : 원)

사업(세부)내용	비 목	예산액(A)	지출액(B)	집행잔액 (A-B)	발생사유

※ 발생사유 : 사업계획변경, 사업취소, 지급사유 미발생, 집행잔액, 이자 등 기재

## III. 자부담 집행 현황

### 1. 지출일자별 집행내역

(단위 : 원)

통장 인출 일자 (순)	인출액	지 출 내 역									지출 결의 번호	비고 및 증빙 유형
		사업 (세부) 분야	비목	내역	지출 일자	지 출 액				지급처		
계						계	공급가액	부가세	부가세 대체입금일			
<예시> 2017-09-05	470,000	판로개척	인쇄비	책자 제작	2017-09-05	330,000	300,000	30,000	2017-09-30		17-05-01	세금 계산서
			사무 용품비	토너 구매	2017-09-05	110,000	100,000	10,000	"		17-05-02	신용 카드
			여비	시장조 사여비	2017-09-05	30,000	30,000	-			17-05-03	출장 보고서
<예시> 2017-09-08	300,000	제품생산	재료비	콩구매	2017-09-08	300,000	300,000	-			17-08-01	판매 확인증

1) 자부담 통장에서 부가가치세 집행 불가(수익금통장에서 월별 정산 등 대체 입금 조치)

2) 비고 : (세금)계산서, 법인 신용카드(전표), 현금영수증, 간이영수증, 재료판매 확인증, 출장결과보고서 등 증빙서

## 2. 자부담 집행 잔액 발생사유

(단위 : 원)

사업(세부)내용	비 목	예산액(A)	지출액(B)	집행잔액(A-B)	발생사유

※ 발생사유 : 사업계획변경, 사업취소, 지급사유 미발생, 집행 잔액, 이자 등 기재

## IV. 매출액 현황

(단위 : 원)

총매출액 ('17. 0월~12월)	수익금						
	계(A+B)	투자금 적립(A)	집행액 (B)				
			소계	재투자	배당	지역공헌	기타

## 마을기업 지원사업비 지급신청서

마을기업 현황	법인대표					
	주 소					
	예 산 집 행	담당자	(전화: )			
'17년도 사업비 현황	총 사업비		정부지원		자체 부담금	
	천원 (100%)		천원 ( %)		천원 ( %)	
보조 사업비 지급신청 내역	총지원 예정액 (A)	기수령액 (B)	기집행액 (C)	잔액		신청액 (A-B)
				(A-C)	(B-C)	
입금계좌	예금주 :	은행명 :	계좌번호 :			

위와 같이 2017년도 마을기업 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.

첨부서류 : 1. 마을기업 지원 약정서 사본

2. 마을기업 사업 계획서
  3. 법인 명의의 통장사본 1부씩(보조금, 자부담, 수익금) 총 3부
  4. 사업자등록증 사본
  5. 이행보증보험 증권 사본
  6. 한국마을기업협회 가입확인증 사본

2017년 월 일

# 법 인 명

## 대 표 자 (인)

시·군·구청장 귀하

서식 7

## 마을기업 사업 계획변경 신청서

법인명		마을기업명	
대표자		연락처	
사업명			
사업장 소재지			
사업수행 담당자	성명 :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 : e-mail :		
변경내용	변경 전		
	변경 후		
변경사유			

위와 같이 2017년도 마을기업 계획변경을 신청(신고)합니다.

첨부서류 : 변경 된 마을기업 사업계획서 1부.

2017년        월        일

법인명

(인)

대표자

(인)

시·군·구청장

귀하

## 마을기업 지원 약정서

**제1조(목적)** 이 약정서는 관할 000시/군/구청장(이하 “시/군/구”이라 한다)과 마을기업(이하 “기업”이라 한다)간에 마을기업 지정에 따른 권리와 의무 및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효력)** 이 약정에 따른 “시/군/구” 와(과) “기업”의 권리와 의무는 약정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생하며, 보조금 지원 종료(1차 또는 1·2차 최종지원 종료)후 5년까지 효력이 지속되며, 5년 경과시 실태점검 등을 통하여 존속 여부를 결정한다.

※ ‘16년 이전에 선정된 마을기업 포함

**제3조(의무)** ① “기업”은 「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(이하 “지침”이라 한다)」, 「동 약정서」, 「마을기업 사업계획」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.

1. 보조금은 지급 받은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집행을 마쳐야 한다.
  2. 사업운영 및 예산집행은 약정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따라야 하며,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침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3. 지침 상의 사업비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.
  4.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지급받은 물품 등은 용도 외 사용, 양도, 교환,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.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지급 받은 물품을 환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처리절차 및 방법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, 동법 시행령, 자치단체 물품관리운영기준에 준하여 처리한다.
  5. “기업”은 공직선거에서 특정정당을 지지·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  6. 마을기업으로서 공동체성, 지역성, 공공성, 자발성을 지속발전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.
- ② “시/군/구”는 사업계획, 보조금 지급 및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확인·점검을 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“기업”에게 지시할 수 있고, “기업”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- ③ “시/군/구”는 “기업”이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협의 등을 요청하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**제4조(보고 및 제출)** ① “기업”은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업내용 등에 있어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“시/군/구”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.  
② “시/군/구”는 “기업”에게 사업수행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“기업”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.  
③ “기업”은 마을기업으로 존속하는 한 지침에 따라 마을기업 운영현황 및 실적 등에 관한 “시/군/구”的 조사 및 점검(분기 1회, 자립형은 반기 1회)에 응하여야 하며, 매년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.  
④ “기업”은 보조금 집행을 종료한 후 지침에 따라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“시/군/구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사업의 성과와 보조금에 대한 지출 내역서, 정산내역 및 관련 지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약정의 변경 및 해지)** ① “기업”의 요청 또는 “시/군/구”的 지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해 약정은 변경 및 해지 될 수 있다.  
② 약정의 해지는 지정취소 사유이므로, 약정해지 사유 발생 시 “시/군/구” 와 “기업”은(는) 지침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.

**제6조(정부지원 보조사업 지원신청)** “기업”은 타 정부지원 보조사업(사회적기업 등)으로 지원신청이 가능하나, 마을기업으로서의 정체성 유지, 자립성 강화 등을 위해 마을기업 보조금 지원 종료후(1차 또는 1·2차 최종지원 종료) 2년이 경과되어야 한다.

**제7조(준용)** 이 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, 시행지침,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.

이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“시/군/구” 와 “기업”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첨부 : 마을기업 사업계획서 1부.

2017년       월       일

시·군·구청장	(인)
법      인      명	(인)
대      표      자	(인)

## 마을기업 신청 법인 현지조사표

항 목	조 사 내 용		비고
마을기업명		조사자	(기초) (지원기관)
응답자		일시 / 장소	
법인명		조직형태 (설립일자)	협동조합(2015.3.3.)
사업명		1 차 지정년도	
공동체 구성	<p>1. 마을기업 설립 목적 및 배경은 적절한가</p> <p>2.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사업 신청 및 출자에 동의 하였는가 (마을기업 회원(출자자)수 및 구성, 주주명부, 특수 관계 포함여부 확인)</p> <p>3. 대상 지역, 주민 참여 비율, 주민 관심과 지지는 어떠한가 (지역범위 확인, 지역주민과의 조화)</p> <p>4. 마을기업에 대한 목표가 뚜렷하고 구성원간 소통과 공감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</p> <p>5. 마을기업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가 (지원제도 및 육성지침 숙지 정도, 설립전 및 전문 교육 이수여부)</p> <p>6. 별도의 모사업 또는 모법인이 존재하지 않는가</p> <p>7. 구성원은 사업 수행능력 기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가 (특정인에게 역할이나 부담이 집중되어 있지 않은가)</p> <p>8. 마을기업회원 및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할 소지는 없는가</p> <p>* 증빙서류(사업계획서, 마을기업회원명단, 법인등기부등본, 정관, 주주및 조합원 명부, 법인 명의 통장, 설립전교육이수확인서, 전문교육이수확인서(2차년도), 각종 인·허가 관련)를 현장 확인할 것</p>		

항 목	조 사 내 용	비고
사업계획	<p>1. 사업계획 요약  ※ 2차 지원의 경우 1차년도 사업 성과 요약 제시할 것</p> <p>1-1. 2차 지원의 경우, 1차년도 사업과의 연계성이 있는가</p> <p>2. 사업계획이 사업현장, 지역상황과 적절한 조화가 되는가  (마을기업 활동을 통해 생산한 상품 및 서비스의 제작, 판매, 유통 구조 및 범위)</p> <p>3. 활용자원 :  ※ 활용자원 : 특산물, 주변 관광자원, 역사유적 등</p> <p>3-1. 제조업의 경우,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자재를 조달하는가  (수급지역, 재료비사용 비율 등)</p> <p>4.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인가</p> <p>5. 독창성 또는 독과점성이 높은 지원인가  ※ 전국 어디에서든 가능한 사업은 독창성이 없음</p> <p>6. 실현가능성이 있는 사업인가  (마을기업 사업의 시장경쟁력, 수익창출 구조)</p> <p>7. 제품생산, 판매, 영업 등 관련 법령상 사업운영이 가능한가  (사업자등록증(업종, 업태), 인허가사항, 교육사항, 사업장 소유권, 사용권, 계약기간, 임대료 등)</p> <p>8. 특정업체 등에 의존적인 성격은 없는가</p> <p>9. 마을기업 사업 주체의 전문성은 확보되었는가  (상품 및 서비스 생산, 기술 등 관련)</p>	
2차지원 추가검토	<p>1. 1차년도 사업내용과 변경사항  (사업내용, 법인등기부등본, 사업자등록, 각종 계약서류 등)</p> <p>2. 2차년도 출자금(자부담) 확보 방법 및 변경사항  (회원구성, 출자자수, 임원, 출자금 및 출자 비중)</p> <p>3. 1차년도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, 시행착오, 변수 등  특이사항</p> <p>4. 1차년도 보조금으로 득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 및 등록  적절성, 시설 및 설비 확인</p> <p>5. 제무재표확인, 순수익 적립 및 유보금 확인, 재투자 여부 확인</p>	

항 목	조 사 내 용	비고												
사업비 관련	<p>1. 총사업비(백만원)</p> <p>가. 합계 :</p> <p>나. 보조금 :</p> <table border="1"> <tr> <td></td> <td>국비</td> <td>시·도비</td> <td>시·군·구비</td> </tr> <tr> <td>금액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총액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able> <p>다. 자부담 : , (사업비의 %)</p> <p>2. 사업비 규모는 적절한가</p> <p>3. 사업계획 상 경상경비(인건비, 재료비 등)의 규모는 타당한가</p> <p>4. 수익금 재투자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(순이익 30% 이상 적립, 50% 이상 유보금 등 확보 계획 여부)</p> <p>5. 사업비 산출내역은 적절한가 (예산 사용의 적절성,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, 인건비 비율 및 기 타운영비 한도)</p> <p>※ 증액이나 감액 필요하지 않은지 구체적으로 검토 할 것</p> <p>6. 수입과 지출계획은 적정한가 - 3년간 계획수립 여부, 산출근거, 추계의 적정성</p>		국비	시·도비	시·군·구비	금액				총액				
	국비	시·도비	시·군·구비											
금액														
총액														
자립 가능성	<p>1. 사업의 시장성은 높은가</p> <p>2.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*, 필요 기술, 유통망 등은 갖추었는가 ※ 판로확보 등 수익창출 방안(단순 청사진 불가)</p> <p>3. 지원 종료이후 적절한 자립 운영 계획이 있는가</p> <p>4. 안정적으로 지속적 활동이 기대되는가</p>													

항 목	조 사 내 용	비고
사회공헌	<p>1. 지역사회 공헌 활동 계획이 적절한가            ※ 지역 문제 해결에 기여 정도 등</p> <p>2.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가</p> <p>3. 지역 내 타 단체와의 연계성은 높은가</p> <p>4. 지역 경제 내 선순환 구조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가</p>	
일자리창출	<p>1. 일자리 창출 :      명            - 발전가능성 : 최대      명(      년)</p> <p>2. 임금, 근무여건, 일자리의 질 등이 적절한가</p> <p>3. 일자리 창출 계획이 실현 가능한가</p>	
기존 지원실적	<p>1. 기 지원받은 실적</p> <p>가. 사업명 :</p> <p>나. 지원기간 :</p> <p>다. 사업비 :</p> <p>라. 주관부처 :</p> <p>※ 현재, 해당 사업과 관련한 중복지원 여부 철저히 검증하여 지원 배제</p> <p>※ 지원 받을 실적이 여러건일 경우 모두 기재할 것</p>	
종합의견	※ 사업계획서에 대한 현지 실사 결과 종합의견 기술	

## 서식 10

## 마을기업 적격 검토 확인서

항 목	내 용			비고		
마을기업명			검토자			
사업명			지역	전북 김제시		
공동체성	법인설립 여부	법인명 조직형태 법인등기일	좋은 마을기업 영농조합법인 2015.6.29.			
	회원구성	출자자수	5인 이상	7명 O/X		
		지역주민수	5인 이상, 70%이상	6명 O/X		
	자발성	자부담 액수	10% 이상	6,000천원 O/X		
	구조 적합성	최고출자자의 출자비율	1인 및 특수관계인 지분합 50% 미만	17% O/X		
	지역성	활용자원 지역자원 활용여부	지역자원으로 적합여부	예) 지역인력, 지역농산물, 지역유류시설(경로당) O/X		
		지역상권 출동여부		(부연설명 가능, 예) 유사업종인 분식집이 인근에 있으나, 대기업 프랜차이즈로 성격 차별화 가능)		
		지역고용 여부		O/X		
공공성	지역내 공공성	예) 귀농인과 원주민의 화합 유도, 지역내 청년 주도 경제 활성화		O/X		
	공헌활동 적질성	예) 매월 지역내 독거노인에 제품(반찬류) 기부(10만원 이상) 예정		O/X		
	기타 공공성 위반 사유 등에 해당 없음			O/X		
기타	마을기업에 자발성에 문제 없음			O/X		
	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해당 없음			O/X		
	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 <sup>1)</sup> 에 해당 없음					

위와 같이 2017년도 마을기업 신청에 대한 적격여부 심사를 확인합니다.

2017년 월 일

○○지방자치단체장

1) 지침 4쪽 ‘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’ 내용 확인

서식 11

**마을기업 지원사업비 교부결정서**

기 관 개 요	명 칭			
	소 재 지			
	기관대표			
교부 신청 현황	교부신청 금 액		기 교부액 금 액	
교부 결정 내역	교부결정액	계 원	국고보조금 원	지방비보조금 원
	사업기간			
	일부지급 또는 부 지급시 그 사유			
교 부 조 건				

위와 같이 2017년도 「마을기업 육성사업」 지원사업비 교부결정을 통지합니다.

2017년 월 일

○○지방자치단체장

서식 12

**마을기업 사업 관리카드**

■ 담당공무원

(작성기준일 : 2017년 월 일)

시 · 군 · 구		담당부서		담당자	
전화번호(사무실)		전화번호(핸드폰)			

■ 마을기업 개요

법인명				마을기업명		
마을기업 구분	<input type="checkbox"/> 1차년도 <input type="checkbox"/> 2차년도 <input type="checkbox"/> 자립형			약정 체결일	'17. . .	
보조금 교부	1차 : . . . .( 천원)	2차 : . . . .( 천원)		이행보증보험 가입일	'17. . .	
법인형태	<input type="checkbox"/> 사단법인 <input type="checkbox"/> 재단법인 <input type="checkbox"/> 영농조합 <input type="checkbox"/> 주식회사 <input type="checkbox"/> 협동조합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 )					
사업자번호 (등록일)	( )		면세 여부 <input type="checkbox"/> 가 <input type="checkbox"/> 부	업태	종목	
소재지	본점	※ 도로명주소 기재				
	사업장	※ 도로명주소 기재				
연락처	전화	사무실 : 핸드폰 :	이메일			
	홈페이지		FAX			
조직현황	대표자명		회원 (조합원)수			
	실무책임자명		출자자 수			
	이사회	인원	명	집행부 회의	인원	명
개최주기		간 1회	개최주기		간 1회	
목적사업 (정관)						
주요상품						
특허 등 상품관련 획득 인증	* 특허, 상품제조 인허가, 상표, 친환경농산물 인증, 수상, 우수마을기업 등 상품 관련 인허가, 인증마크 명칭 등 구체적으로 기재					

## ■ 마을기업 현황

연도별 사업비 지원 (단위:백만원)	구분	합계	보조금			자부담
			소계	국비	지방비	
계						
2013년						
2014년						
2015년						
2016년						
2017년						

연도별 매출액 (단위:백만원)	구 분	총수입		총지출(원)	이익금(원) [총수입-총지출]
		총매출액(원)	정부지원금(원)		
2013년					
2014년					
2015년					
2016년					
2017년					

연도별 고용인원 (단위:명)	구 분	총인원	
		상시 근로자(명)	선택적 근로자(명)
2013년			
2014년			
2015년			
2016년			
2017년			

연도별 지역공헌 활동	구 분	내 용	① 물품기부 ② 수익금 일부 환원 ③ 불우이웃 성금 ④ 공간 제공 및 공적 공간 재생(주민 교류장소, 주민 이용장소 등) ⑤ 기회제공(문화·예술 참여, 향유, 체험 등) ⑥ 기타[ ]		
			건수	환산금액(원)	내용(번호기입)
2013년					
2014년					
2015년					
2016년					
2017년					

■ '17년도 사업성과

사업내용	
현장사진	
※ 사진설명	※ 사진설명
※ 사진설명	※ 사진설명

## ■ 재물조사표

시설· 물품명	용도	규격	내용 연수	구입 설치일	사진	구입금액(천원)			물품 비치장소
						특교세	보조금	자부담	
			년	월 년 일		합계 :	천원		
			년	월 년 일		천원	천원	천원	
			년	월 년 일		합계 :	천원		
			년	월 년 일		천원	천원	천원	
			년	월 년 일		합계 :	천원		
			년	월 년 일		천원	천원	천원	
			년	월 년 일		합계 :	천원		
			년	월 년 일		천원	천원	천원	
			년	월 년 일		합계 :	천원		
			년	월 년 일		천원	천원	천원	
			년	월 년 일		합계 :	천원		
			년	월 년 일		천원	천원	천원	
			년	월 년 일		합계 :	천원		
			년	월 년 일		천원	천원	천원	

## ■ 마을기업 점검표

### ○ 총괄

법인명		지정차수		대표자명	
소재지				전화번호	

### ○ 점검 내용(해당사항이 이행되었을 경우 √로 표시)

항 목	점검사항	점검 결과			
		1분기	2분기	3분기	4분기
사업 계획	마을기업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이행여부				
	고용계획 이행여부(해당지역 주민 70% 이상)				
	매출계획 이행여부				
	마을기업 육성사업 약정 위반 여부				
	구성원 활동 여부(출자자 및 회원 변동여부)				
예산 사용	마을기업 사업계획서 상의 예산계획 이행 여부				
	보조금 관리 및 수익금 관리의 사업운영 목적 부합여부				
	지역사회 공헌활동에 대한 예산 이행 여부				
회계 관리	세무신고 및 접수 이행 여부				
	회계 관련 서류 작성 및 비치 여부(통장, 장부, 증빙자료 등)				
시설 장비	시설 및 장비 설치 계획 이행여부				
	재물조사표 작성여부				
	유·휴 시설 및 장비 여부(미사용 방치)				

### ○ 점검자 의견(점검시 불충분하거나 문제 사항(불응) 및 기타 의견에 대한 기술)

구분	점검 월일	점검자 의견	점검자		
			직급	성명	서명
1분기					
2분기					
3분기					
4분기					

서식 13

## 보조금 정산검사서

## 보조금 정산검사 내역

### 1. 사업개요

- 사업명 :
- 사업기간 :
- 대상자 :
- 사업내용 :

### 2. 예산집행 총괄

(단위 : 천원)

예산액				집행액						잔액					
계	보조금			자부담	계	보조금			자부담	계	보조금			자부담	
	국비	도비	군비			국비	도비	군비			국비	도비	군비		

※ 잔액이 있을 시 발생 사유 :

### 3. 세부정산 내역

(단위 : 원)

세부항목	재원별집행내역				비고
	계	보조금	자부담	용자	
계					

### 4. 정산검사 결과 종합평가

--

붙임 : 정산 증빙자료 1부. 끝.